

WT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옥 영 수 책임연구원
김 성 채 수산청서기관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옥 영 수 김 성 채	○ 연구설계 및 총괄 ○ 보고서 작성 ○ 자 문

머 리 말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입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WTO 체제하에서는 국민건강 보호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검사·검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검역도 엄격한 국제기준하에서만 하게 되었다. 이것이 UR SPS규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성문제와 수생동식물의 각종 병해충 방지 문제를 위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SPS 규정 외에도 선진국에 의한 각종 위생규정과 수생생물의 검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검역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검사·검역 업무는 매우 낙후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하게 수입검사·검역업무가 늘어나, 당해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검사·검역업무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것이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감이 들지만, 수입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수입검사·검역에 대한 국제간 투명성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수산물 검사·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아울러 이 연구가 후속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기 바란다.

199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내용	3
3. 연구방법	4

제 2 장 수산물의 수입 및 검사·검역 실태

1. 수산물 수입 실태	5
2. 수산물 수입검사 실태	12
3. 수산물 검역 실태	17

제 3 장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

1. 대내 여건 변화	19
2. 대외 여건 변화	28

제 4 장 수산물수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국내제도 검토

1. 우리 나라의 일반적 검사·검역 체제	42
2. 수산물 검사제도의 연혁과 체제	44
3. 수산물 검역제도의 연혁과 체제	51

제 5 장 수산물 검사 및 검역 관련 문제점

1. 수산물수입 및 유통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	53
2.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60
3. 기존 검사·검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63
4. 기타문제	68

제 6 장 수산물 검사·검역업무 개선방안

1. 검사·검역체제의 개편	71
2. 수산물 검사·검역 관련 제도 개선	73
3. 수산물 검사·검역 기능 강화	75

부 록

1. UR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SPS)의 적용에 관한 협정	85
2. 국제 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이용에 관한 지침	103
3. EU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107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실적	6
표 2- 2	연도별 수입수산물 내역현황	7
표 2- 3	품목별 수입수산물 실태변화	8
표 2- 4	연도별 수산물 수입국가별 수입금액변화	9
표 2- 5	연도별 수산물 수입국가별 수입금액 구성비변화	9
표 2- 6	주요 수입국별 품목별 수입금액, 1994	11
표 2- 7	연도별 수산물 검사실적	13
표 2- 8	제품별 수출입 검사실적, 1994	13
표 2- 9	수입내역별 수입검사 실적, 1994	14
표 2-10	연도별 주요 제품별 수입검사건수 및 물량변화	15
표 2-11	제품별 수입검사 실적, 1994	16
표 2-12	국가별 수입검사 실적, 1994	17
표 2-13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실태	18

제 3 장

표 3- 1	수산물 수입자유화 및 예시계획	20
표 3- 2	1996년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20
표 3- 3	가구당 월간 식품구입 지출비 추이	21
표 3- 4	1인 1년당 순식용 식품공급량 변화	23
표 3- 5	수산물 이용형태 변화추이	23

표 3- 6	품목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변화	24
표 3- 7	주요 수산물의 어종별 수요예측	24
표 3- 8	수산물의 증장기 수급전망	26
표 3- 9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식품 관심도	27
표 3-10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점수표	27
표 3-11	SPS 주요 합의내용	30
표 3-12	식품의 위해특성요인 분류	34
표 3-13	식품의 위험도 분류	35
표 3-14	EU의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부칙내용)	37
표 3-15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에 명시된 각종 수생질병	40

제 4 장

표 4- 1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제도 및 기관변천 과정	47
--------	-----------------------------------	----

제 5 장

표 5- 1	연도별 수산물 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54
표 5- 2	수산물 수입검사 방법별 부적합 실태, 1994	55
표 5- 3	품종별 수산물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56
표 5- 4	수입내역별 수산물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57
표 5- 5	주요 수산물 수입대상국별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1994	58
표 5- 6	연근해산 어획물의 선어 및 저차가공품 유통 실태	59
표 5- 7	검사·검역에 있어서 네가티브 시스템의 장단점	61
표 5- 8	수산진흥원 병리과의 업무분장	62
표 5- 9	수산물 검사소의 정밀검사장비 소요량 및	

보유량 실태	67
표 5-10 본소 및 지소별 업무량 실태, 1994	68
표 5-11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실태(1995.9.현재)	69

제 6 장

표 6- 1 포지티브 시스템의 장단점	72
표 6- 2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검사업무량의 변화 및 추정량	76
표 6- 3 지소별 거점화 방안	81

그림 목 차

제 3 장

그림 3-1	UR SPS 협상의 기본구도	29
--------	-----------------------	----

제 4 장

그림 4-1	검사·검역과 관련한 업무체계도	43
그림 4-2	수산물 수입검사 절차	49
그림 4-3	수산물 수입검사처리 흐름도	50

제 5 장

그림 5-1	농수산물 검사·검역 기관별 조직도 비교	65
--------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품목의 수산물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속적 소득증가는 국민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저칼로리식품이나 저공해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90년대 이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사회주의국가나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수입은 중금속, 방사능 및 항생물질 등의 오염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검사·검역업무의 중요성을 크게 높였다. 즉 검사·검역업무는 자국민의 건강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무역규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검역업무가 무역규제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UR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UR SPS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각국은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에 안전한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UR SPS 협약 등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수입검사·검역업무가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기존 수산물 수입검사는 종래 수출수산물 검사를 전담하고 있던 국립수산물검사소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입검사에 관한 근거법이 수산물검사소 설립방법인 수산물검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검사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검역과 관련된 근거법이 명확치 않아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검사·검역과 관련된 제반 대내외 여건변화와 현재의 수산물 검사·검역 실태를 고려하여 향후 수산물 검사·검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검사·검역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목적

수입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는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국민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또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어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수산물 검역기능의 강화는 국민건강측면뿐만 아니라 양식대상물의 병해충을 예

방함으로써 국내양식업을 보호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수산물 검사 및 검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수산물 검사 및 검역과 관련된 제문제점을 분석하여, 검사·검역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두어지고 있다.

2. 연구범위와 내용

2.1. 연구범위

수산물 수입검사 및 수산물검역은 현재 다원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산물 수입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검역소와 수산청 산하의 수산물검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물 검역은 수산물검사소와 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은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품목구분을 하여 각기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식품검역소와 수산물검사소와의 품목구분은 가공정도를 가지고 구분되는 것으로서 식품검역소에서 다루는 품목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였더라도 통조림, 연제품 등 고차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품목들이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보다 식품으로서 국민건강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의 관점에 의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적으로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수산물검사소와 수산진흥원에서 대상으로 하는 품목을 연구대상품목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연구범위로는 상기 품목과 관련된 수산물 수입 검사 및 검역제도를 우선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그와 병행하여 해당 검사기관의 기능 및 운영문제를 부차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2.2. 연구내용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수산물의 수입 실태와 검사 및 검역 실태를 살펴본 다음에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이는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하여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동향이 매우 민감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이후 검사·검역이 무역규제의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수산물 수입검사·검역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연구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황 및 각종제도 파악을 위하여서는 기존 통계자료나 문헌조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분석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수입검사·검역 관련기관에 대한 현지면담조사를 통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어민 또는 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제 2 장

수산물의 수입 및 검사·검역 실태

1. 수산물 수입 실태

1.1. 수산물 수입총량변화

우리 나라 수산물 수입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까지는 전면 금지되었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식생활 개선으로 수산물의 국내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국내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1978년부터 일반 대중어종에 한하여 제한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다시 전면 금지되었고, 다만 예외적 조치로서 어업협력사업에 의한 어획물 중 국내에는 많이 소비되지만 외국에서는 식품으로서 널리 소비되지 않는 품목과 외국에 대한 수출불가품의 극히 일부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서도 수입을 개방하여 고용증대와 수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므로 국내소비용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

¹ 수산청,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1. pp. 70~71.

표 2-1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천^{1/2}, 백만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980	...	871	40	...	...	...
1985(A)	432	891	91	83	523	974
1990	455	1,513	286	368	741	1,881
1991	492	1,643	366	576	858	2,219
1992	437	1,518	328	506	765	2,024
1993	371	1,497	356	542	727	2,039
1994(B)	385	1,647	381	726	766	2,373
증감률(B/A)	△10.8	84.8	318.7	774.7	46.5	143.6
연평균증감률	△1.27	7.06	17.25	27.25	4.33	10.40

자료: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5.

이 결과 1990년대 이후 수산물 수출금액은 1,600백만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수입금액은 매년 2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94년에는 726백만달러에 이르게 되었다<표 2-1>. 이에 의하면 수산물 수입은 물량증가보다 금액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입물량 증가율이 연평균 17.25%인데 비해, 금액증가율은 27.25%로서 월등히 높다. 따라서 1985년 평균 수입단가가 912달러/㎏이던 것이, 1994년에는 1,906달러/㎏로 2배 이상 높아졌다.

12. 수입내역별 변화

수입수산물을 내역별로 보면 크게 수출용원자재, 어업협력용, 기타내수용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수출용원자재는 궁극적으로 가공수출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료어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일찍부터 정책적으로 장려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수산물 수입에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어업협력용은 연안국들의 해양자국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원양회사들의 직접출어가 어려워질 경우 연안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어획

표 2-2 연도별 수입수산물 내역현황

단위: 천%, 백만달러

연 도	수출용원자재		어업협력용		기타내수용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980	38	32	2	5	-	-	40	37
1985	87	70	4	21	-	-	91	91
1990(A)	96	169	78	91	112	108	286	368
1991	120	211	88	147	158	218	366	576
1992	56	150	123	160	149	196	328	506
1993	56	150	107	146	193	252	356	542
1994(B)	55	184	101	115	225	436	381	726
B/A(%)	57.3	108.9	129.5	126.4	200.9	403.7	133.2	197.3

자료: 수산청, 연차보고서 각연도

한 것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일종의 원양어획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협력용의 수입물량은 연안국의 해양자국화현상이 심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산물 수입내역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타내수용수산물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소비하기 위해 무역업자들이 순수무역형태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산물 수입문제가 제기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다. 기타내수용수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한편 1990년 이후 수입수산물의 내역별 변화를 보면 <표 2-2>에서와 같이 수출용원자재와 어업협력용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나타내는데 비해 순수 수입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타내수용의 경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에서 1994년의 4년간 물량면에서는 2배 가량, 금액면에서는 4배 가량 증가하였다.

1.3. 수입품목별 변화

수입수산물의 변화를 품목별로 보면 <표 2-3>과 같다. 1994년의 품목별

표 2-3 품목별 수입수산물 실태변화

단위: %, 천달러, 달러/%

구 분	1987(A)			1994(B)			변화율(B/A)(%)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활 선 어	1,075	3,966	3,689	11,311	58,679	5,188	1,052.2	1,479.6	140.6
냉 동 품	257,992	192,998	748	291,441	525,136	1,802	113.0	272.1	240.9
해조염신품	3,097	2,548	823	12,400	28,480	2,297	400.4	1,117.7	279.1
통 조 립	416	1,169	2,811	2,268	21,847	9,633	545.2	1,868.9	342.7
원양 어류	-	-	-	2,614	16,647	6,368	-	-	-
기 타	1,638	2,653	1,620	61,229	75,478	1,233	3,738.0	2,845.0	76.1
합계(평균)	264,216	203,334	770	381,261	726,267	1,905	144.3	357.2	247.4

자료: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실적 1987 및 1995에서 작성.

수입실적을 1987년과 비교해 볼 때 물량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기타수산물과 활선어이다. 즉 비교기간인 7년 동안 기타 수산물의 경우 37배가, 그리고 활선어의 경우 11배가 증가하였다. 기타수산물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방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활선어의 수입이 증가된 것은 고급어 수입이 점차 늘어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입단가를 보면 통조림과 해조염신품이 각각 3.4배, 2.8배 증가한 반면 기타수산물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조림이나 해조염신품에 있어서도 점차 고급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4. 수산물 수입국별 변화

수산물 수입국별 변화는 <표 2-4>와 같다. 이에 의하면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동향으로는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증가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즉 1994년의 경우 러시아,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각각 1억달러 이상이며 이들 3개국에 의한 수입금액이 423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입금액의 58.4%를 점하고 있다<표 2-5>.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1991년 이후에 수

표 2-4 연도별 수산물 수입국가별 수입금액변화

단위: 천달러, %

연도	러시아	미국	중국	아르헨	일본	태국	뉴지	칠레	기타	합계
1984	·	25,101	·	4,782	11,874	418	3,355	3,324	15,886	64,740
1985	·	26,597	·	3,361	16,905	264	2,228	614	33,260	83,229
1986	·	42,508	·	2,796	11,506	507	1,840	2,34	50,293	111,764
1987	·	97,133	·	2,671	16,959	1,051	5,075	2,990	77,455	203,334
1988	·	161,863	·	5,361	23,101	1,598	6,563	2,758	90,402	291,646
1989	·	115,128	·	3,897	40,208	2,568	10,103	3,652	146,054	321,610
1990	·	133,420	·	10,015	35,322	4,076	9,671	3,915	171,686	368,095
1991	133,883	198,660	29,003	32,618	44,897	9,364	11,476	8,147	108,431	576,479
1992	110,375	153,563	40,163	43,242	31,721	12,712	15,090	9,778	89,843	506,487
1993	143,638	138,396	44,466	42,822	40,397	8,254	14,676	9,811	100,029	542,489
1994	176,275	135,489	111,831	49,792	42,323	27,985	14,470	13,940	154,162	726,267
연평균 증가율	9.60	18.36	58.81	26.40	13.55	52.26	15.74	15.41	25.52	27.35

자료: 수산청, 수산물수출입실적, 1994.

표 2-5 연도별 수산물 수입국가별 수입금액 구성비변화

단위: %

연도	러시아	미국	중국	아르헨	일본	태국	뉴지	칠레	기타	합계
1984	0.0	38.8	0.0	7.4	18.3	0.6	5.2	5.1	24.5	100.0
1985	0.0	32.0	0.0	4.0	20.3	0.3	2.7	0.7	40.0	100.0
1986	0.0	38.0	0.0	2.5	10.3	0.5	1.6	2.1	45.0	100.0
1987	0.0	47.8	0.0	1.3	8.3	0.5	2.5	1.5	38.1	100.0
1988	0.0	55.5	0.0	1.8	7.9	0.5	2.3	0.9	31.0	100.0
1989	0.0	35.8	0.0	1.2	12.5	0.8	3.1	1.1	45.4	100.0
1990	0.0	36.2	0.0	2.7	9.6	1.1	2.6	1.1	46.6	100.0
1991	23.2	34.5	5.0	5.7	7.8	1.6	2.0	1.4	18.8	100.0
1992	21.8	30.3	7.9	8.5	6.3	2.5	3.0	1.9	17.7	100.0
1993	26.5	25.5	8.2	7.9	7.4	1.5	2.7	1.8	18.4	100.0
1994	24.3	18.7	15.4	6.9	5.8	3.9	2.0	1.9	21.2	100.0

자료: 수산청, 수산물수출입실적, 1994에서 작성.

입이 시작된 것으로서 1984년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수산물수입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의 점유비율이 57.1%에 이르렀다.

한편 국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56.81%, 태국의 경우 52.26%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26.4%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5. 주요 수입국별 품목별 수입금액

1994년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품목별 현황을 보면 <표 2-6>과 같다. 우선 여기서 각국의 집중도 수치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0.6177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는 각각 0.1 전후로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집중도란 수입품목 중 얼마나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르헨티나의 경우 냉동오징어, 냉동연육 등 두, 세 개의 품목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냉동낙지, 피조개, 냉동삼치 등의 품목이 가장 높은 비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0% 정도로서 매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그 결과 냉동 복어, 냉동 게, 해파리 등이 대량수입되어 국내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는 명태 등 연육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그 외 아귀, 냉동 넙치류, 냉동 명란, 임연수어, 냉동대구 등이 수입되어 국내어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일본도 활도미, 농어, 냉동 명란, 냉동 문어, 냉동 정어리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김, 굴 치패 등도 상당량 수입되어 매우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러시아로부터도 비교적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는데, 냉동명란이 전체 품목의 절반 가량을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명태연육, 냉동대구, 개살, 냉동명태, 어분, 냉동볼락 등의 품목도 수입되고 있다. 또 태국으로부터도 냉동새우와 해파리 외에 냉동연육, 보리새우, 냉동게 등이 수입되고 있다.

표 2-6 주요 수입국별 품목별 수입금액, 1994

단위: 천달러

순위	러 시 아			미 국			중 국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1	냉동 명란	89,522	50.8	명태 연육	26,664	19.7	냉동 낙지	23,135	20.7
2	명태 연육	17,808	10.1	기타 연육	26,406	19.5	피 조 개	11,745	10.5
3	냉동 대구	17,072	9.7	아 귀	18,796	13.9	냉동 삼치	8,994	8.0
4	계 살	11,780	6.7	냉동넙치류	14,500	10.7	냉동 복어	6,746	6.0
5	냉동 명태	10,409	5.9	냉동 명란	10,963	8.1	냉 동 계	5,956	5.3
6	어 분	6,684	3.8	임 연 수 어	7,668	5.7	해 파 리	5,010	4.5
7	냉동 볼락	6,291	3.6	냉동 대구	4,025	3.0	어류피레트	4,535	4.1
8	임 연 수 어	5,254	3.0	어 분	3,739	2.8	개 아 지 살	3,733	3.3
9	냉동 왕게	2,901	1.6	냉동 연어	3,407	2.5	냉동 새우	2,859	2.6
10	냉동 연어	2,009	1.1	신선 대구	3,339	2.5	기타 어류	2,715	2.4
11	기 타	6,545	3.7	기 타	15,982	11.8	기 타	36,403	32.6
합계		176,275	100.0		135,489	100.0		111,831	100.0
집중도	0.2897			0.1203			0.0727		
순위	아르헨티나			일 본			태 국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1	냉동오징어	38,424	77.2	활 도 미	9,400	22.2	냉동 새우	9,838	35.2
2	냉동 연육	6,070	12.2	농 어	7,663	18.1	해 파 리	7,012	25.1
3	냉동 어류	3,967	8.0	어류 유지	5,328	12.6	냉동 연육	4,048	14.5
4	냉동 새우	968	1.9	냉동 명란	2,546	6.0	새 우 류	3,496	12.5
5	냉동 볼락	208	0.4	냉동 문어	2,071	4.9	냉 동 계	1,494	5.3
6	냉동민대구	86	0.2	냉동정어리	1,948	4.6	어 즙	606	2.2
7	냉동 어란	60	0.1	어류피레트	1,674	4.0	열 대 어	303	1.1
8	냉동 도미	9	0.0	김	1,193	2.8	보리 새우	284	1.0
9	-	-	-	굴 치 패	1,079	2.5	냉동 낙지	236	0.8
10	-	-	-	기타 활어	766	1.8	어류피레트	175	0.6
11	-	-	-	기 타	8,655	20.4	기 타	493	1.8
합계		49,792	100.0		42,323	100.0		27,985	100.0
집중도	0.6177			0.1094			0.2272		

1) 집중도 = $\Sigma(\text{개별품목량}/\text{합계})^2$

자료: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5에서 작성.

2. 수산물 수입검사 실태

2.1. 수산물 검사 총량 실태

2.1.1. 수산물 검사 총량 변화

수산물 검사소에 의한 수산물 검사물량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1년 이후 수산물 수입검사업무가 수산물 검사소로 이관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1981년 검사건수 8,078건, 검사물량 191,324㎏이던 것이 1991년부터 수입검사업무가 추가되어 1994년에는 총검사건수가 17,286건, 총검사물량은 374,261㎏으로 늘어났다<표 2-7>.

수산물 검사를 수출입별로 구분해 보면 수출검사의 경우 1993년부터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검사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검사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수입검사는 1992년부터 크게 늘어 1993년부터는 수입검사 위주로 역전되었다.

2.1.2. 수산물 제품별 검사총량 실태

수산물 검사총량에 대한 실태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이에 의하면 검사실적은 수출검사와 수입검사 외에 국내소비용 검사를 들 수 있는데, 국내소비용 검사는 다시 정부비축용과 국내소비용으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수출검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994년의 총검사건수는 17,286건으로서 이 중 순수수출검사건수가 3,837건인 반면 수입검사건수는 12,950건이다. 물량 면으로는 순수수출검사물량이 84,638㎏인 반면, 수입검사물량은 262,202㎏으로서 총 검사물량의 70.1%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소비용 검사물량은 27,421㎏이 된다.

수출검사는 냉동품이 건수 및 물량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수 면에서는 건제품이, 물량면에서는 염장품이 많다. 수입검사도 냉동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수 면에서는 신

표 2-7 연도별 수산물 검사실적

단위: 건, %

연 도	수 출 검 사 ¹		수 입 검 사		합 계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1981	8,078	191,324	-	-	8,078	191,324
1985	9,295	203,937	-	-	9,295	203,937
1990	10,304	246,760	-	-	10,304	246,760
1991	10,032	240,991	1,065	115,712	11,097	356,703
1992	9,097	222,843	4,478	214,604	13,575	437,447
1993	6,301	130,336	6,916	248,126	13,217	378,462
1994	4,336	112,059	12,950	262,202	17,286	374,261
연평균 증가율(%)	- 4.67	- 4.03	129.95 (70.05)	31.35 (10.53)	6.03	5.30

¹ 국내소비용 검사 포함.

()는 1992년 이후 증가율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각연도

표 2-8 제품별 수출입 검사실적, 1994

단위: 건, %

구 분	수출검사		수입검사		국내소비용검사		합 계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 수	물 량
활어·패류	-	-	1,417	5,925	-	-	1,417	5,925
신선·냉장	-	-	3,995	5,180	-	-	3,995	5,180
냉 동 품	2,112	55,327	6,503	237,900	207	22,036	8,822	315,263
건 제 품	795	5,238	296	1,357	191	1,488	1,282	8,083
염 장 품	510	13,923	658	9,414	61	2,020	1,229	25,357
해 조 류	-	-	81	2,426	40	1,877	121	4,303
통 조 립	285	9,008	-	-	-	-	285	9,008
기 타	135	1,142	-	-	-	-	135	1,142
합 계	3,837	84,638	12,950	262,202	499	27,421	17,286	374,261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선·냉장품이, 물량면에서는 염장품이 많다. 수입검사에서 통조림 등이 빠진 것은 수입검사제도상 통조림과 같은 고차가공품은 식품검역소에서 실시하

표 2-9 수입내역별 수입검사 실적, 1994

단위: %, 천달러, 건

품 목	물 량(A)	금 액(B)	건 수(C)	건당중량 (A/C)	건당금액 (B/C)
일반 내수용	162,076(61.8)	344,979(62.4)	10,805(83.4)	15.00	31.93
합작 어획물	61,899(23.6)	59,281(10.7)	699(5.4)	88.55	84.81
수출용원자재	36,903(14.1)	144,027(26.1)	1,359(10.5)	27.15	105.98
기 타	1,324(0.5)	4,185(0.8)	87(0.7)	15.22	48.10
합 계	262,202(100.0)	552,472(100.0)	12,950(100.0)	20.25	42.66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다. 국내소비용 검사는 정부비축용이나 일반소비용이기 때문에 냉동품, 건제품 등의 실적이 대부분이다.

2.2. 수산물 수입검사 실태

2.2.1. 내역별 수입검사실적

1994년의 수입수산물 검사실적은 12,950건이며, 물량면에서는 262,202톤으로서 전체 수입실적의 68.8%가 수산물검사소의 검사대상이 되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1994년의 검사실적을 수입내역별로 구분해 보면 <표 2-9>와 같다. 이에 의하면 수입검사 실적 중 일반내수용이 162,076톤으로 물량면에서 62%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합작어획물은 61,899톤으로서 24%를 점하고 있어 앞서 수입실적과 비슷한 율을 보이고 있다.

건당 중량을 보면 합작어획물이 건당 88.6톤으로서 가장 큰데 비해 일반내수용은 15톤으로서 가장 적다. 건당 금액은 수출용 원자재가 106.0천달러로서 가장 많은 반면, 일반 내수용이 역시 31.9천달러로서 가장 적다.

2.2.2. 제품별 수입검사 실태

제품별 수입검사 실태는 <표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주요 제품에

표 2-10 연도별 주요 제품별 수입검사건수 및 물량변화

구 분		활어·패류	신선·냉장	냉동품	염장품	기 타	합 계
건수 (건)	1992(A)	1,036	596	2,575	188	83	4,478
	1993	986	1,651	3,364	550	365	6,916
	1994(B)	1,417	3,995	6,503	658	377	12,950
	B/A(%)	136.8	670.3	252.5	350.0	454.2	289.2
물량 (%)	1992(A)	2,248	1,727	207,096	2,272	1,261	214,604
	1993	4,220	1,937	232,673	7,433	1,863	248,126
	1994(B)	5,925	5,180	237,900	9,414	3,783	262,202
	B/A(%)	263.6	299.9	114.9	414.3	300.0	122.2
건당 물량 (%)	1992(A)	2.17	2.90	80.43	12.09	15.19	47.92
	1993	4.28	1.17	69.17	13.51	5.10	35.88
	1994(B)	4.18	1.30	36.58	14.31	10.03	20.25
	B/A(%)	192.6	44.8	45.5	118.4	66.0	42.3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각연도.

대한 수산물 수입검사는 건수, 물량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건수 증가율이 훨씬 높아 건당 물량규모는 매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92년에 대한 1994년의 2년간 변화를 보면 전체 건수는 2.9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물량은 1.2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당 물량은 1994년의 경우 20.25%로서 1992년 47.92%의 42%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의 원인으로서는 수입개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가능 품목수가 늘어나고, 신선·냉장, 염장품 등 고급품목의 수입이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량면에서는 여전히 냉동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은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즉 염장품이 414.3%, 신선·냉장품이 299.9%, 활어·패류가 263.6%인데 비해 냉동품은 114.9%로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값싼 냉동품보다는 고급품목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아울러 건당 물량의 변화를 보면 활어·패류나 염장품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신선·냉장이나 냉동품

표 2-11 제품별 수입검사 실적, 1994

단위: %, 천달러, 건

품 목	중 량(A)	금 액(B)	건 수(C)	건당중량 (A/C)	건당금액 (B/C)
활어패류	5,925	25,173	1,417(31)	4.18	17.76
신선냉장	5,180	28,642	3,995(38)	1.30	7.17
냉 동 품	237,900	465,148	6,503(276)	36.58	71.53
건 제 품	1,357	7,922	296(26)	4.58	26.76
염 장 품	9,414	23,100	658(17)	14.31	35.11
해 조 류	2,414	2,296	74(11)	32.62	31.03
한 천	12	191	7(2)	1.71	27.29
합 계	262,202	552,472	12,950(401)	20.25	42.66

()는 품종수

자료: 수산물 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대체로 고급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1994년의 제품별 수입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이에 의하면 <표 2-10>에서 기타에 해당하던 품목으로서 해조류와 한천이 있는데, 해조류의 건당 중량은 32.62%이며, 이는 냉동품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2.2.3. 국가별 수입검사실적

1994년 수산물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국가는 총 72개국이며, 이중 러시아가 59,192톤으로 23%를 차지하여 최대수입검사국이 되고 있다<표 2-12>. 다음으로 미국이 42,098톤, 중국이 41,464톤, 아르헨티나가 41,220톤으로 대체로 16%씩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면으로는 중국이 118,731천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러시아 113,313천달러, 미국 73,525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검사실적에 있어

표 2-12 국가별 수입검사 실적, 1994

단위: %, 천달러, 천

국 명	물 량(A)		금 액(B)		건 수(C)		건당중량(A/C)		건당금액(B/C)	
	실 적	순 위	실 적	순 위	실 적	순 위	실 적	순 위	실 적	순 위
러 시 아	59,192	1	113,313	2	612	5	96.72	4	185.15	2
미 국	42,098	2	73,525	3	3,594	1	11.71	9	20.46	13
중 국	41,664	3	118,731	1	2,753	2	15.13	7	43.13	6
아르헨티나	41,220	4	35,727	4	236	11	174.66	2	151.39	3
뉴질랜드	11,597	5	15,545	7	677	4	17.13	6	22.96	11
일 본	7,129	6	32,933	5	865	3	8.24	12	38.07	7
칠 레	5,660	7	7,316	12	202	12	28.02	5	36.22	8
노르웨이	5,653	8	11,926	10	524	7	10.79	11	22.76	12
온두라스	5,288	9	5,012	13	14	14	377.71	1	358.00	1
태 국	5,196	10	23,135	6	472	9	11.01	10	49.01	5
인도네시아	5,146	11	12,158	9	350	10	14.70	8	34.74	9
베트남	3,780	12	13,411	8	477	8	7.92	13	28.12	10
카나다	3,720	13	8,245	11	533	6	6.98	14	15.47	14
북한	2,655	14	1,583	14	24	13	110.63	3	65.96	4
기 타	22,204	-	79,912	-	1,617	-	13.73	-	49.42	-
합 계	262,202		552,472		12,950		20.25		42.66	

자료: 수산물 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물량보다는 금액의 순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들 나라로부터 비교적 고급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기타국 중에서 수입검사량이 100톤~2,000톤의 규모인 나라는 32개국에 이르며, 100톤 미만인 국가는 26개국이다. 특히 이 중에는 10톤 미만인 국가도 12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서 매우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산물이 수입되어 검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수산물 검역 실태

수산물 검사소에서 실시되는 검역업무는 수산물 검사와 병행하여 부수적

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다. 즉 수입검사시 콜레라 등과 같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등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검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의 일부로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산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식용 종묘에 대한 검역 실태는 <표 2-13>과 같은데, 1994년의 경우 총 62건으로서, 이 중 굴종패 및 굴유생과 같이 굴과 관련된 품목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1995년 9월 현재는 총 36건으로서 이 중 자라와 관련된 품목의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표 2-13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실태

어 종	1994		1995(9.25 현재)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굴 종 패	9	132,989,780 콜렉타	6	13,739,252 콜렉타
굴 유 생	14	2,138,200 마리	-	-
자 라	15	108,699 마리	6	8,620 마리
자 라 알	4	38,500 개	4	18,500 개
실뱀장어	6	60 kg	4	200 kg
보리새우	4	1,337 마리	4	1,355 마리
전복치패	3	300,000 패	1	65,000 패
금빛황어	1	208 미	-	-
송 어 알	3	1,410,000 미	4	420,000 립
연 어 알	2	120,000 립	-	-
진주조개	-	-	5	2,156,000 패
미꾸라지	-	-	2	17,560 kg
산천어알	1	300,000 립	-	-
합 계	62		36	

자료: 수산진흥원

제 3 장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

1. 대내 여건 변화

1.1. 수입자유화의 진전

수입자유화의 진전은 흔히 대외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검사·검역의 측면에서는 대내 여건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검사·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국제동향변화를 대외적인 여건변화라고 할 때, 수입자유화는 전반적인 국내 무역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내 여건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89년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 즉 GATT/BOP 합의에 따라 1989년 수산물에 대한 제1단계 수입자유화 예시가 된 이후, 1994년에는 제2단계 수입자유화 예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개방품목을 늘려 왔다. 그 결과 1995년 현재 88.7%의 수입자유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7년에 이르러서는 개방화율이 100%에 이르게 될 것이다<표 3-1>.

1996년 이후 1997년까지 수입개방될 것으로 예시된 품목은 갈치, 우렁챙이, 고등어, 오징어, 명태, 멸치 등 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어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는 당초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들 품목의 개방시기를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1996년 이후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1 수산물 수입자유화 및 예시계획

단위: 개, %

구 분	1991년까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품목수	342	342	342	354	354	354	354
개방품목수	235	255	275	308	314	331	354
자유화율	68.7	74.5	80.4	87.0	88.7	93.5	100.0

자료: 수산청, 수산행정수첩, 1995.

표 3-2 1996년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연도	1996	1997
품목	○ 병어(신선냉장), ○넙치(신선냉장) ○기타넙치류(신선냉장) ○꽁치(신선냉장), ○가자미(냉동) ○가다랭이(냉동), ○고등어(냉동) ○붕장어(냉동), ○꽁치(냉동), ○갈치(염장염수장), ○갑오징어(냉동), ○우렁챙이(산것,신선냉장), ○김(건조 이외의 것), ○꽁치(통조림) ○취치(취치포), ○고등어(통조림) ○명태(냉동)	○뱀장어(산것), ○방어(산것) ○넙치(산것), ○고등어(신선냉장) ○명태(신선냉장), ○갈치(신선냉장) ○기타어류(신선냉장) ○갈치(냉동), ○조기(냉동) ○기타어류(냉동), ○멸치(건조),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새우살)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오징어(냉동), ○바지락(냉동) ○갑오징어와 오징어(건조) ○전복(산것,신선냉장) ○기타연체동물(산것,신선냉장) ○기타연체동물(냉동) ○김(건조), ○다랭이(통조림) ○김(조제), ○가다랭이(통조림)

주: 냉동명태('96.1.1)를 제외하고 모두 당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방

1.2.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1.2.1.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

지난 20여년간 우리 나라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식품소비행태의 변화이다. 즉 외식산업의 급격한 확산과 육류 및 수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곡물소비의 감소 등과 같이 식품소비행태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취업 확대, 국민들의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식품소비행태의 변화는 식품소비의 주체인 가계단위가 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표 3-3>에는 도시가구당 월간 식품구입 지출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75년에서 1994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구당 총소비지출액은 연평균 16.9%씩 증가해 왔으며, 이 중 식품구입을 위한 지출액은 동기간 13.9%씩 증가해 왔다. 그리고 식료품 중 외식비의 지출은 연평균 31.2%의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

표 3-3 가구당 월간 식품구입 지출비 추이

단위: 원, %

연 도	월간 총소비 지출액	식 료 품 지 출			
		일반식품지출	어개류지출	외식비	합 계
1975	58,350	25,882(44.3)	2,028(3.5)	560(1.0)	28,470(48.8)
1980	180,531	68,114(37.7)	6,513(3.6)	2,871(1.6)	77,498(42.9)
1985	317,000	99,700(31.5)	10,300(3.2)	8,900(2.8)	118,900(37.5)
1990	685,700	153,600(22.4)	21,100(3.1)	44,800(6.5)	219,500(32.0)
1994	1,140,400	210,500(18.5)	30,400(2.3)	97,800(8.6)	338,700(29.7)
연평균증가율	16.9	11.7	15.3	31.2	13.9

()내는 월간 총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연도.

개류에 대한 지출 역시 식료품 구입지출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연평균 15.3%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출부문의 가구당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을 보면, 1975년도에는 식료품비 지출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8%였으나 1994년에는 29.7%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곧 엔젤계수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개별 경제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료품지출 중 외식비의 비중은 1975년 총소비지출의 1.0%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8.6%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형의 소비지출 구조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어개류 지출에 대한 비중은 1975년 3.5%에서 1994년 2.3%로 1.2%포인트가 낮아지긴 하였으나 식료품 전체의 지출비중이 동기간 19.1%포인트 낮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 지출비중은 오히려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개류에 대한 식품구입지출비의 상대적 증가는 단순한 비용증가의 측면보다는 식품공급량의 증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물가상승에 의한 비용증가의 측면도 있지만, 수산물 순식용공급량의 증가에 의해 식품구입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순식용공급량의 변화는 <표 3-4>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70년 대비 1993년의 경우 곡류 소비량이 79.0%로 줄어든 데 비해 육류는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수산물도 1.6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수산물 품목별로 볼 때 해조류는 4.6배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육류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2.2. 수산물 이용 추세

국민식생활의 개선으로 수산물의 소비패턴은 가공품 및 고급품에 대한 소비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 3-5>는 수산물 이용형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수산물 가공률이 1970년대 30% 정도이던 것이 1990년대에는 80% 정도로 높아졌다. 이 결과 1994년의 연근해생산량 2,590천톤 중 75.7%에 해당하는 1,961톤이 가공원료로 사용되었으며, 나머

표 3-4 1인 1년당 순식용 식품공급량 변화

단위: kg

연 도	곡 류	육 류	수 산 물			
			어 류	패 류	해조류	합 계
1970(A)	216.1	8.4	18.3	4.9	2.6	25.8
1973	221.0	9.2	24.7	2.9	5.4	33.0
1978	193.3	11.6	19.3	2.9	3.7	25.9
1983	183.0	14.9	24.2	7.3	6.6	38.1
1988	184.9	20.6	18.9	7.5	7.2	33.6
1993(B)	170.8	28.3	18.3	11.9	12.0	42.2
B/A(%)	79.0	336.9	100.0	242.9	461.5	16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연도.

표 3-5 수산물 이용형태 변화추이

단위: 천%,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연근해생산량(A)	846	1,569	1,925	2,252	2,350	2,590
선 어 유 통	575	929	954	889	438	629
가 공 원 료(B)	270	641	998	1,363	1,912	1,961
가 공 률(B/A)	32.0	40.8	51.1	60.5	81.4	75.7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연도에서 작성

지 629천%이 선어형태로 유통 소비되었다.

한편 수산물 소비행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품목별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변화를 보면 <표 3-6>과 같다. 이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우리 나라 수산가공품의 생산량은 연평균 5.7%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제품형태별로 볼 때 고차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조림, 연제품은 연평균 약 13~16%의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해 온 반면, 건제품, 염장 및 염신장품은 오히려 감소해 왔다. 그리고 냉동품과 해조제품은 각각 5.7%와 7.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6 품목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변화

단위: 천 $\frac{M}{T}$, %

연 도	건제품	염신포 ¹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연제품	어유분	기타	합 계
1980	54	37	11	602	44	13	14	78	786
1985	45	13	27	937	54	69	65	52	1,236
1990	32	21	58	1,320	88	97	95	64	1,755
1994	40	11	64	1,311	117	109	48	15	1,715
연평균 증감률	-2.1	-8.3	13.4	5.7	7.2	16.4	9.2	-11.1	5.7

¹ 염신 및 염장품 포함

자료: 농림수산부, 수산통계연보; 수산청, 수산청 연차보고서에서 작성.

표 3-7 주요 수산물의 어종별 수요예측

단위: 천 $\frac{M}{T}$, %

어 종	1993(A)	1995	2000(B)	2005	2010(C)	비 율	
						B/A	C/A
가 자 미	6.1	6.4	7.0	8.0	9.0	115	147
명 태	154.2	164.9	194.7	237.0	278.3	126	180
조 기	34.5	37.5	46.4	55.9	65.0	134	188
갈 치	60.7	62.0	65.4	68.3	70.6	108	116
멸 치	164.1	170.3	186.6	201.1	213.2	114	130
고 등 어	59.2	61.6	67.8	73.2	77.7	115	131
전갱이	16.9	18.9	24.8	30.7	36.6	148	217
기타어류	293.9	303.7	329.1	352.3	371.6	120	126
새 우	37.2	39.6	46.2	53.0	59.1	124	159
굴	21.4	22.2	24.2	26.0	27.5	113	129
바지락	12.2	12.7	14.0	15.2	16.2	115	133
오징어	364.9	385.2	448.5	504.6	554.7	123	152
김	155.0	167.6	203.3	240.0	274.7	131	177
합 계	1,380.3	1,452.6	1,658.0	1,865.3	2,054.2	120	149

자료: 박성쾌·정명생, 수산물의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2.3. 수산물 수급전망

최근 국민소득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수요의 증가 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은 우리 나라 주요 어종의 증장기 수요량을 예측한 자료이다. 이에 의하면 어종에 따라 수요량의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3년 대비 2010년의 수요량은 평균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갱이는 117% 증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내 기호도가 매우 높은 조기와 명태는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이에 비해 현재 수산물 공급은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즉 연근해어업의 경우 자원량의 감소로 중·단기간에 있어서 생산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도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제와 연안 어업자원 보유국가의 폐쇄적 자원관리 정책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 생산증대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산물의 수요 증대와 공급의 정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만간 수산물의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 격차는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외국의 수산물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1997년 이후 수산물 수입개방화율이 100%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제기된 수산물 수급의 증장기 전망 자료는 <표 3-8>과 같다. 이에 의하면, 수출수요를 포함한 수산물 수요는 2011년에 약 590만톤이 되지만, 수산물 공급은 323만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부족량은 약 2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과거에는 주로 가격, 영양가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신선도, 식품안전성 여부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표 3-8 수산물의 중장기 수급전망

단위: %

구 분		2001 (D)	2011 (E)	기간중 증감량 (E-D)
수산물 ¹ 수 요	합 계(A)	4,610	5,916	2,397
	어로어획물(B)	3,440	4,130	1,386
	양식어획물(C)	1,170	1,786	1,011
수산물 공 급	합 계(a)	3,230	3,230	247
	어로어획물(b)	2,400	2,400	192
	양식어획물(c)	830	830	55
수 급 격 차 (%)	a/A	70.1	54.6	△ 15.5
	b/B	69.8	58.1	△ 11.7
	c/C	70.9	46.5	△ 24.4

¹ 수산물 수요에는 수출수요까지도 포함된 것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1992.

<표 3-9>에서와 같이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시 무공해식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무공해식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사방법은 7점 척도법으로서 7점의 경우 '매우 높다'였는데, 전체 평균이 5.1점으로서 관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월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집단의 관심이 5.2~5.5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후가 5.2~5.4로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식품구매시 비록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공해식품을 실제 구입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구입의사가 있다는 답을 한 정도를 보면 <표 3-10>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무공해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수준별에 있어 무공해식품을 실제구입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표

3-9>의 관심도와 다소 다른 결과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식과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실제가입여부는 20~50대는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와 60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식품 관심도

단위: 점

월소득수준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구분	관심도 ¹	계층구분	관심도 ¹	지역구분	관심도 ¹
1백만원 미만	5.2	10대	4.8	서울	5.1
1~2백만원	5.2	20대	4.9	부산	5.1
2~3백만원	5.0	30대	5.3	대구	5.1
3~4백만원	5.4	40대	5.4	대전	5.1
4~5백만원	5.2	50대	5.2	광주	5.5
5백만원 이상	5.5	60대	5.2		

¹ 7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7점 만점

자료: 상공회의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연구,1993

표 3-10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점수표

단위: %

월소득수준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구분	구매의도여부	계층구분	구매의도여부	지역구분	구매의도여부
1백만원미만	67.3	10대	61.8	서울	70.7
1~2백만원	70.5	20대	75.8	부산	75.0
2~3백만원	72.0	30대	71.5	대구	72.8
3~4백만원	85.1	40대	76.9	대전	71.4
4~5백만원	92.0	50대	73.4	광주	76.7
5백만원이상	93.3	60대	61.8		

자료: 상공회의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연구,1993

2. 대외 여건 변화

2.1. UR 위생 및 검역(SPS)분야 합의

2.1.1. 협상배경과 추진경위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GATT 논의에 있어 GATT XX조 일반적 예외항 중 b항의 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를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광범위한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 규정은 GATT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국은 임의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농수산물무역의 자유화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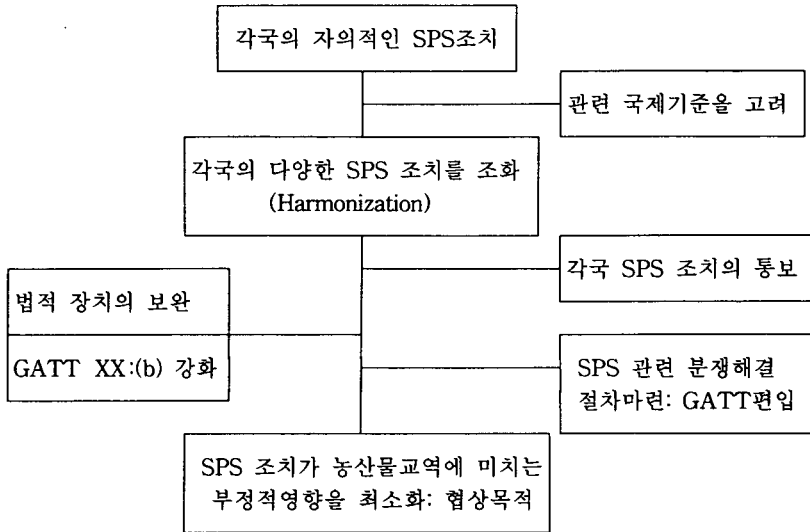
따라서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 농산물무역과는 별개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1988년 제10차 농산물협상에서 「위생/검역 작업단(Working Group on SPS)」설치가 합의되었으며, 이후 1990년까지 12차례의 작업단회의를 거쳐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분야 합의초안이 마련되었다.

1991년 3월 UR협상 재개 이후 SPS 협상은 상당한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1991년 12월에는 던켈총장의 책임 하에 SPS 합의초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1993년 12월 15일 UR합의와 동시에 SPS 분야도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2.1.2. SPS 협상의 특성

SPS 협상은 농산물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각각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쟁점별로 입

그림 3-1 UR SPS 협상의 기본구도



자료: 이재옥 등, 동식물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1993.

장이 제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수입국의 SPS 규제조치를 완화하려는 입장과 다른 일면으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건강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위생 및 검역규제를 철저히 하려는 입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SPS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상의 기본구도는 <그림 3-1>과 같은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1.3. 합의내용 및 시사점

주요 합의내용은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동등성원칙의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의 문제, 투명성문제, 방역·검사 및 승인절차, 기술지원, 개도국 특별우대,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행정기구, 시행문제가 바로 그것이다<표 3-11>.

표 3-11 SPS 주요 합의내용

구 분	내 용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 ○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과학적정당성에 근거하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해 적절한 보호수준을 결정
동등성 원칙	○ 수출국과 수입국의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SPS조치를 수입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인정 요청시 협의할 의무가 있음
위험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 위험평가지 고려기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 및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특정 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병해충 미발생지역의 존재, 생태 및 환경조건, 검역 및 기타 처리사항 ○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요인: 경제적 요인 및 SPS에 의한 교역제한 효과
병해충지역 관련사항	○ 수입국의 SPS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 수출국은 병해충 미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 증거를 수입국에 제공
투명성	○ 각국은 SPS조치의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방역·검사 및 승인절차	○ 각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설정 등과 이와 관련된 검사/검역방법, 절차
기술지원	○ 개도국에 대한 검역관련 기술지원
개도국 특별우대	○ 개도국에 대한 장기간의 유예허용(전부 또는 일부유예)
협의 및 분쟁 해결절차	○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행정기구	○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 설치
시행 및 최종규정	○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 시행 ○ 각종 유예 규정

SPS 합의는 위생 및 검역문제가 WTO체제로 편입되고 각국 SPS규제의 국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외에 많은 함축성을 지니게 된다. 즉 SPS가 WTO의 유일한 합법적 수입제한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위험평가제도의 신규도입 내지 운용 확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기존 수입금지 지역이 축소되고, 동등성 인정요구가 급증하며, 검역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제시 요구가 빈발할 것 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SPS합의는 우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기구와의 조화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 규제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또는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향후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SPS 규제의 국제기준 일치여부 조사 및 과학적 근거 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동등성 인정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의 수입금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국들의 동등성 인정요청이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우리의 수입금지조치는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위험평가제도는 수입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규제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많은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의 검사·검역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지식축적과 운용경험 축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제도의 확산

2.2.1. HACCP의 전개과정

危害分析 및 重要管理點 監視制度(HACCP: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는 1960년대 후반 NASA의 아폴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우주여행의 안전한 식품제조를 위해 창안된 식품위생관리 수법으로서, 이 수법을 미 FDA가 받아들여 저산성통조림식품 GMP(적정 제조기준)에 반영하게 되었고 이후 대규모 식품회사가 자주위생관리 방식으로 채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법이 다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미국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식품미생물기준분석위원회가 식품규제에서 HACCP 방식의 유효성을 발표하고 행정당국에 이 방법을 권고한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미 행정당국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 각 기관과 대학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미국식품미생물기준 자문위원회(NACMCE)를 설치하였으며, 동위원회에 의해 1989년 'HACCP Principles for Food Production'을 공포하였다. 이후 식육, 가공육 제조에 대해서도 HACCP 방식의 채택을 법으로 제정하는 등 식품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식품제조와 관련된 위생관리 시스템화의 효시는 1970년대 말 上田에 의해 'Total Sanitation'이라는 제조관리론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河端과 上田에 의해 HACCP 제도가 일본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초 생면류 등 일부 식품업체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는 후생성에 의해 가공육 처리장에 이 방식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미생물학적 위생관리에 대해 공식적 입장에서 의 적용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¹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의 적정제조기준에 대하여 HACCP 방식이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장차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되지 않는 것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방식이 검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국제간 관심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¹ 정진웅, "식품의 위해미생물관리와 HACCP," 「식품KS정보」 제 26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p. 9.

2.2.2. HACCP의 내용

HACCP 방식은 危害分析(HA: Hazard Analysis)과 重要管理點 監視(CCP: Critical Control Poin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HACCP의 내용은 식품원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해 그 원재료의 생산에서 시작하여 제조, 가공, 보관,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서 소비될 때까지의 각 공정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 미생물 위해(병원성 미생물, 부패·변패미생물, 미생물독소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중에서 특히 엄중한 관리를 하여야 할 개소(CCP)를 정하고, 거기서의 허용한계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내지는 적절한 빈도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감시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감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²

HACCP은 당초 식품의 미생물위해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발달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모든 면이 고려되어 현재 HACCP을 도입하고 있는 식품제조회사에서는 미생물학적 위해 외에 화학적 위해(농약, 중금속 등), 물리적 위해(유리조각, 금속조각 등)도 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HACCP 방식에는 7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제1은 원재료, 제조/가공, 수송/배송, 판매, 조리 및 최종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위해의 평가와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방지대책을 확립하는 것이며, 제2는 확인된 위해의 제어에 필요한 중요관리점을 설정하는 것이며, 제3은 설정된 CCP에서 각각 적절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는 각 CCP의 감시(관리)방식을 정하는 것이며, 제5는 하나의 CCP를 감시할 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견될 때 취해야 할 수정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고, 제6은 HACCP계획의 문서에는 효과적인 기록보존 방식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² 김명호, “HACCP(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시스템,” 「식품KS정보」 제 23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p. 3.

표 3-12 식품의 위해특성요인 분류

위험구분	위 해 내 용
A	가장 위해도가 높은 특별 Class. 급식될 때까지 한번도 멸균조작이 실시되지 않는 제품이면서도 유아, 고령자, 허약자 또는 기타 질병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이 먹도록 표시된 식품(제품)
B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즉 상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식품(제품)
C	제조공정에서 위해미생물을 살균하는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 식품(제품)
D	제조공정중에 가열, 제균 등의 멸균조작이 가해지지만, 그 후 포장까지의 단계에서 2차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E	수송 및 배송중 또는 소비단계에서 잘못된 취급을 할 확률이 높은 식품
F	최종제품으로서 포장된 후, 또는 가정에서 조리할 때 최종적인 가열이 없는 상태로 섭취되는 식품(식료)

고, 제7은 HACCP 방식이 바르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의 원칙에 있어 각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위해의 평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 위해특성요인을 분류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식품의 위해특성요인은 <표 3-12>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되며 식품의 위험도는 이를 토대로 0~Ⅵ까지의 7범주로 구분된다<표 3-13>.

2.2.3. HACCP과 관련된 세계 동향

현재 미국은 HACCP 방식을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여 각 식품제조회사들은 자주적 공정관리 방식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으며, 만일 국가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될 경우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식품 검사·검역에 있어서는 현재 식품안전성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

표 3-13 식품의 위험도 분류

위험범주	위해특성(A ~ F)에 따른 사항
VI	○ 위해특성요인의 위험구분 A가 포함되는 특별한 범주(Category). ○ A의 위해특성요인이 포함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 범주에 분류.
V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
IV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중 4가지에 해당하는 식품
III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중 3가지에 해당하는 식품
II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중 2가지에 해당하는 식품
I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식품
0	○ 위험구분 B ~ F까지의 5가지 중 1가지도 해당하지 않는 식품

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HACCP 제도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HACCP 제도를 공식제도로 채택할 경우 UR SPS 협정의 동등성조항에 의해 자국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위생처리수준과 동등한 위생수준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럴 경우 선진각국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HACCP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추측된다. 도미노현상에 의해 HACCP 제도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HACCP 제도가 미국과 같이 국가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주요 식품회사들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미국이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공식화할 것이다.

2.3.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2.3.1. 전개과정

유럽의 경제공동체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EU 각국은 역내 내수시장의 형성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산제품은 위생문제에 높은 관

심이 집중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EC 각국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위생 조건을 설정해 둠으로써 역내 자유로운 교역에 큰 장애가 되었다.

원래 어획물은 신선한 상태로 어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획 후 비위생적인 조작 또는 처리로 오염과 후속되는 부패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단계의 가공과 저장 및 수송 도중에 있는 선어 및 가공수산물의 올바른 위생적 처리를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는다면 다른 일반 상품과 같이 자유로운 교역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회는 회원국간의 기존 위생조건의 차이에 따라 자유로운 교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3월 EC 집행위원회에 어획물의 위생적 가공과 시장출하에 관한 종합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C 집행위원회는 1989년 12월 동물검역에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1990년에는 이 지침에 수산물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여 1991년 발효를 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제3국에서 EC 역내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지침 이전부터 가동중에 있던 가공공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내용을 변경하였다.

2.3.2. 주요내용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지침은 본문 3장과 부칙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장은 일반사항으로서 용어의 정의, 목적, 출하금지 어종,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EC 집행위원회의 역할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 2장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제3장에는 종결규정으로서 지침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칙은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세부분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계깊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EU의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부칙내용)

구 분	제 목	내 용
제1장	가공선탁에 관한 조건	○ 가공선의 설계 및 장비에 관한 조건 ○ 수산물의 선상처리 및 보관에 관한 위생조건
제2장	양륙도중 및 그 이후의 요건	○ 양륙기기 및 양륙방법 ○ 수산물 판매시장의 조건
제3장	육상시설의 일반조건	○ 공장시설과 대지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 ○ 위생에 관한 일반조건
제4장	육상 어획물 처리에 관한 특별조건	○ 선어에 대한 조건 ○ 냉동제품에 대한 조건 ○ 동결어의 해동조건 ○ 가공제품의 조건 ○ 기생충에 관한 조건
제5장	가공중의 위생관리 및 검사	○ 일반적인 점검 ○ 특별점검(관능검사, 기생충검사, 화학검사, 미생물 분석)
제6장	포장	○ 포장관련 사항
제7장	식별표지	○ 상품과 관련된 정보표시(원산지 등)
제8장	창고보관 및 수송	○ 상품별 보관창고의 조건
제9장	보완사항	○ 부칙 각항에 대한 보완사항

2.4. 水生動物 檢疫과 관련된 동향

2.4.1. 수생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구

수생동물의 검역과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國際獸疫事務局(OI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이 있다. 당초 이 기구의 설립취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공통적이고 항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1924년 새로운 가

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에 통보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위생 상태의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8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기구는 가축전염병방지가 주된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동물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수산업과 관련된 수생동물 검역업무도 중요 업무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OIE의 회원국은 1993년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53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각종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OIE의 조직은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는 총회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각 회원국의 대표로서 구성되며 권한과 임무는 OIE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는 사무국의 행정 및 예산의 집행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5개주를 4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별로 매 2년마다 지역별 관심사항을 중점토의하기 위하여 모인다. 전문위원회는 다시 11개의 세부 위원회가 있는데 수생동물과 관련하여서는 이 11개의 세부위원회 중 어류 질병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4.2. 수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OIE의 활동과 동향

수생동물의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종래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 중에 그 일부분을 설정하여 놓았다. 그러나 수산업의 발달, 특히 양식업의 발달은 각종 수생동물 질병의 만연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양식업을 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수생동물의 질병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양식업이 성한 많은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에 대한 독립된 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결과 1991년 OIE의 전문위원회 중 어류질병위원회는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으

며,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4년 최종 시안이 마련되었다.

2.4.3.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시안)의 내용

이 지침은 전문과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은 다시 총론, OIE에 통보하여야 할 질병, 기타 중대한 질병, 건강관리 및 위생, OIE에 의해서 인가된 국제증명서 모델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지침은 전문에서 지침의 목적을 수의행정 및 기타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제무역을 위한 수역 위생증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제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주요 수생동물 질병의 진단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생동물의 위생관리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총론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 국제무역을 위한 윤리와 수생동물 위생규칙, 수입위험분석, 수입/수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각종 수생동물 관련 질병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세부 질병종류는 <표 3-15>와 같다. 제4장 건강관리 및 위생에 있어서는 혈액 시료채취 및 예방접종과 병원균 멸균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5장은 각종 품목별 국제증명서가 제시되어 있다. 국제위생증명서는 수입국이 자국의 양식물이나 소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위생증명요구를 할 경우 자유무역의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설정되고 있다.

표 3-15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에 명시된 각종 수생질병

구 분	품목군	질 병 명
OIE에 통보 해야 할 질병	어 류	EHN(Epizootic haematoietic necrosis) IHN(Infectious haematopoietic necrosis) OMV(Oncorhnhchus masouvirus) SVC(Spring viraemia of carp) VHS(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연체류	Bonamiosis(Bonamia ostreae,B.sp.) Haplosporidiosis(Haplosporidium nelsoni) Marteiliosis(Marteilia refringens,M.sydneyi) Mikrocytosis(Mikrocytos mackini, M.roughleyi) Perkinsosis(P.marinus, P.atlanticus, P.olseni) Ieiscioeowa(Iridovirus)
기타 중대한 질병	어 류	CCVD(Channel catfish virus disease) Encephalitis IPN(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ISA(Infectious salmon anaemia)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Bacterial kidney disease Enteric septicaemia in catfish Piscirickettsiosis
	이매패조개류	현재 없음
	갑각류	BMNV(Baculoviral midgut gland necrosis virus infection) BP(Baculovirus penaei infection) MBV(Monodon baculovirus infection) HHNV(Infectious hypodermal and hematopoietic necrosis) Yellowhead disease Crayfish plague

2.5. 기타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제도 및 향후 추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국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규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산물 위생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로는 방사능문제가 있다. 아직 방사능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국제기구에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에 있어서 방사능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ttee)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식품의 방사능처리 방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식품의 방사능 처리에 관한 일반규격과 이와 관련한 실행규약을 채택하였다. 이후 식품에 대한 방사능처리는 많은 나라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FA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WHO의 세 기구가 합동으로 식품의 방사능처리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식품에 있어서 방사능처리는 손쉬운 방법과 저렴한 경제성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성이란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처리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4 장

수산물수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국내제도 검토

1. 우리 나라의 일반적 검사·검역 체제

1.1. 검사와 검역의 구분

검사와 검역업무가 명확한 정의에 의해 구분되어 시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검사와 검역이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검사·검역업무가 정밀해짐에 따라 경계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검역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러한 부분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検査는 인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檢疫은 동식물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관업무도 인체와 관련된 검사업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육류와 관련해서는 동물검역소에,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수산물검사소에 각각 위탁처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식물과 관련된 검역업무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이들 검사·검역업무는 <그림 4-1>과 같이 5개의 검사·검역 관

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검사·검역체제가 대체로 포지티브 시스템인데 반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네가티브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다.

2. 수산물 검사제도의 연혁과 체제

2.1. 수산물 검사제도의 연혁

2.1.1. 수산물 검사제도의 변천과정

우리 나라 수산물 검사의 효시는 1908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해조류의 산지검사를 들 수 있다.¹ 이후 1913년 5월 조선총독부령으로 海藻移出檢査規則을 제정하여 부산, 목포, 원산, 인천세관에서 우뚝가사리, 가사리, 도박, 진도박, 석목, 비단풀 등 6종에 대하여 국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후 건어물, 통조림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멸치분말비료에 대한 성분분석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일제시대의 검사제도를 답습하다가 1950년에 단일법인 수산물검사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953년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게 되었다. 1958년에는 수출용냉동수산물검사규칙을 제정하여 냉동품검사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수산물검사 관련제도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검사표준변경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요구규격에 의한 수출이 가능토록 하였고, 1975년에는 생산과정 검사시 위생상태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위생적 처리로 우수제품생산을 유도하였다. 또 2년 후인 1977년에는 내수용 수산통조림의 의무검사를 희망검사로 개정

¹ 水友會, 「현대한국수산사」, 1987. p. 649.

하여 내수용수산물통조림의 사후점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사후점검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1978년에는 검사증명의 현지발급체도를 도입하여 낙도, 원거리 가공업체의 편의도모와 적기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수산물의 고차가공품 개발이 촉진되고, 인스턴트식품화가 추진됨에 따라 수산물 검사품목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81년에는 어육연제품 및 냉장패류가 추가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검사대상 품종 수만도 수백종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1985년에는 수산물통조림 제조업무허가가 수산청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산물검사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산제품점검제를 폐지하고 통조림의 밀봉부 검사제를 신설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산물 검사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1980년대까지의 수산물 검사제도는 수출 및 내수용 수산물에 대한 검사에 국한되었던 데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이슈로 제기되었다. 또한 수출용 수산물에 있어서도 수출경쟁력제고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에 실시되어 오던 수출용 및 내수용 수산물 검사에 있어서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간소화 방침의 일환으로 1993년 의무검사제가 대폭 완화되어 냉동굴, 냉동복어, 고등어통조림 등 식품위생상 품질검사가 불가피한 31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검사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이어 1994년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수산물검사를 면제하게 되었다.

한편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동향파악과 저질품 수입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1991년 일부 지역에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수산물 검사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990년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부산검역소의 검사의뢰분에 대한 검사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92년에는 수산물검사소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본소 및 전국지소에서 수입검사가 전면 실시되었다.

2.1.2. 수산물 검사기관의 변천과정

현재 수산물 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 검사소의 전신은 1908년 발족된 목포상공회의소 소속하의 해조검사소라고 할 수 있다.² 그 후 1913년 그 기능과 명칭의 변경없이 소속만 세관으로 이전되었는데, 1918년에 와서는 검사대상이 해조류뿐만 아니라 일반 수산제품도 포함하는 수산제품검사소로 발족하였으며 이는 해방될 때까지 그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수산제품검사소로 한동안 업무가 이루어지다가 1949년 대통령령으로 상공부소속의 중앙수산검사소로 직제가 제정 공포되어 수산검사업무가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다. 중앙수산검사소는 1955년 해무청이 발족함에 따라 해무청 소속으로 되었다가, 1961년에는 농림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수산청 발족과 더불어 1966년 수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검사업무의 확충에 따라 규모가 점차 커지다가 1981년에는 오늘날의 국립수산물검사소로 명칭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1년 수산물 수입검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수입검사업무가 점차 확대되면서 검사업무가 보다 정밀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5년에는 종래 단순히 검사 1과와 검사 2과로 구분되던 것을 검사 1과는 검사과로, 검사 2과는 분석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지소도 후포지소를 폐소하는 대신, 김포공항을 통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김포공항에 서울지소가 신설되었다<표 4-1>.

² 앞의 책 p. 663.

표 4-1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제도 및 기관변천 과정

연대(연도)		변 천 과 정
해방 이전	1908	○ 최초의 수산물 검사업무 실시(목포상공회의소 해조검사소)
	1913	○ 海藻移出檢査規則을 제정(부산,목포,원산,인천세관에서 6개품목에 대한 검사)
	1918	○ 수산제품검사소 발족
	1936	○ 성분분석검사제도 도입(멸치분말비료)
1990 년대 이전	1949	○ 중앙수산검사소 발족(상공부 소속)
	1950	○ 수산물 검사법 제정
	1953	○ 수산물 검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1955	○ 중앙수산검사소 소속 변경(해무청)
	1962	○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966	○ 중앙수산검사소 소속 변경(수산청)
	1969	○ 검사표준변경제의 도입
	1975	○ 생산과정 검사시 위생상태 점검제도 도입
	1977	○ 내수용 수산통조림에 대한 희망검사 실시
	1978	○ 검사증명의 현지발급제도 도입
	1981	○ 검사대상품목의 확대(어육연제품 및 냉장패류)
1990 년대 이후		○ 국립수산물 검사소로 명칭변경
	1985	○ 통조림의 밀봉부 검사제 신설
	1991	○ 수산물 검사소에 의한 수입수산물 검사실시(부산지역)
	1992	○ 수산물 검사소에 의한 수입수산물 전면 검사실시
	1993	○ 수출수산물에 대한 의무검사제 완화(31개 품목으로 축소)
		○ 일부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 위탁실시
	1994	○ 수출수산물에 대한 일반적 경우의 검사 면제

2.2. 수산물 수입검사체제

2.2.1. 검사근거 및 검사대상

수산물 수입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37조에 의해 수산동식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업무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수산청장에게 위탁된 상태에 있으며, 수산청장은 이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수산동식물이나 단순가공한 수산동식물이 되는데, 여기서 단순가공품이란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말하게 된다. 이를 품목별로 다시 구분해 보면 수산동식물에는 활어패류가 해당되며, 단순가공품에는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가 해당된다.

2.2.2. 검사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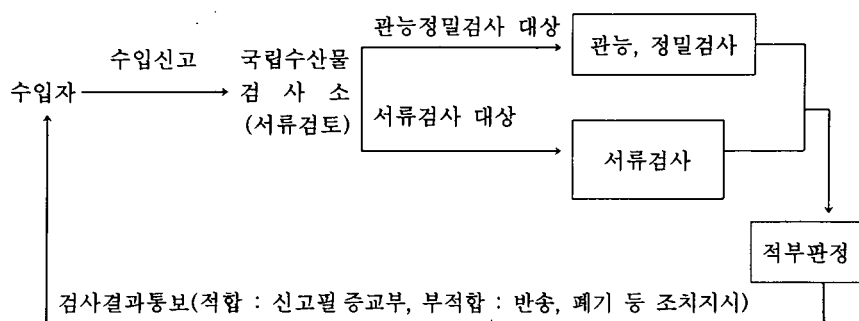
수입수산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수입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수입화물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 검사(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검사소장은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즉시 검사에 임하게 되는데 수입신고된 수입수산물은 일차적으로 수산물검사소에 의해 서류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다시 관능정밀검사와 서류검사에 의해 수입 적부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정밀검사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상의 食品公典에 의하게 된다.

관능검사시에는 정밀검사용 검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필요한 추출검사개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검사결과 최소단위검체의 품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경우는 전량을 적합으로 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전량을 부적합으로 한다. 검사 결과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 이 때 수입이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는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는 반송되거나 폐기 등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그림 4-2>.

2.2.3. 검사항목별 검사대상 종류 및 검사항목

수입수산물의 검사종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에는 서류검사도 포함된다.

그림 4-2 수산물 수입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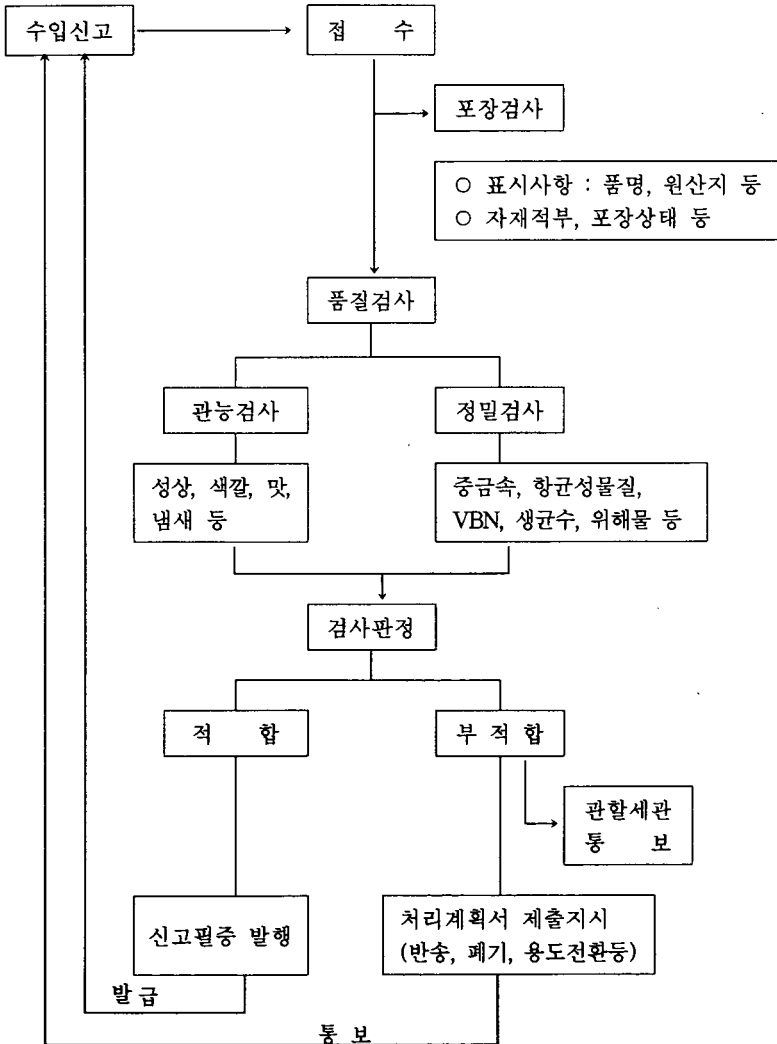
따라서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대부분의 수입수산물이 해당된다. 관능검사라 함은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 색깔, 맛, 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검사대상은 서류검사의 대상수산물 중 일정한 수산물을 제외한 것이 된다. 이 때 제외되는 수산물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제 11조 관련)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동법에서 제외되는 식품의 종류에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대상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말리거나, 숙성·염장한 식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배제되며, 익힌 것 중에도 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밀검사의 대상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데,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이 대상이 된다. 정밀검사에서는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관능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상, 색깔, 맛, 냄새, 선별, 그레이징, 활력도 등이 있으며, 정밀검사 항목에는 수분, 선도(VBN), 생균

수, 중금속(수은, 납 등), 방사능, 항균성물질, 기생충, 패류독소 등이 있다. 이러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수산물 수입검사처리 흐름도



자료: 국립수산물 검사소.

3. 수산물 검역제도의 연혁과 체제

3.1. 수산물 검역제도의 연혁

1993년에는 수입수산물·식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가 일반검역소에서 수산물검사소로 위탁됨에 따라 일부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도 수산물검사소로 이관되어 왔으며, 그 결과 활어에 대한 검역업무는 수산물 검사소가, 이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수산진흥원에 대한 업무 외에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3.2. 수산물 검역 체제

3.2.1. 검역근거 및 검역대상

수산물 검역업무는 현재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즉 활어수입에 대한 검역업무는 수산물검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양식용 종묘 등의 移植과 관련해서는 수산진흥원 병리과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활어에 대한 수산물검사소의 검역업무는 검사의 연장선에서 기생충검사나, 인체와 관련된 전염병 병원체검사 등 일부 검역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검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수산물검사소의 능력상 기생충, 어병 등 검역과 관련한 제반 역학조사기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양식용 종묘 등의 이식과 관련한 검역업무는 농림수산부령 제1138호에 의한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4조 6항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국내 이식승인을 할 때에는 이식품종 반입시에 국립수산진흥원장, 수산연구

소장 또는 내수면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전문직 공무원을 입회시켜 병충해 감염여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염된 품종에 대하여는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2.2. 이식수산동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식수산동식물에 대한 검역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반입 5일전까지 관할 수산연구소에 병충해 감염검사를 의뢰하고 통관시에는 무병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의뢰를 받은 관할 연구소장은 검사능력이 없거나 업무사정상 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반입지에서 가장 가까운 연구소(수산진흥원 본원 포함)에 검사를 이첩 처리토록 한다.

이식동식물에 대한 검역시 검사항목은 수산진흥원 내부지침에 의해 검사가 가능한 세균성 및 기생성 질병에 한하지만, 바이러스 질병검사는 민원인이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신청할 때, 이식대상 수산동식물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출국가에서 들어 온 것이라면 국립수산진흥원장은 병충해 감염여부에 관한 반출국가의 관련자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전 제출케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 5 장

수산물 검사 및 검역 관련 문제점

1. 수산물수입 및 유통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

1.1. 무분별한 수입증가

1.1.1. 수입검사 부적합률의 변화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징후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산물 수입검사시 부적합 정도를 나타내는 부적합률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수산물 수입에 있어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입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반송조치되거나 폐기 또는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률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마구 수입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높은 부적합률은 검사업무의 강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업무폭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에

표 5-1 연도별 수산물 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건, %, 천달러,

연도	검 사 실 태(A)			부적합 실태(B)			부적합률(B/A)(%)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수	물량	금액
1992	4,478	214,604	249,751	141	1,082	3,562	3.15	0.50	1.43
1993	6,916	248,126	290,290	287	2,140	6,386	4.15	0.86	2.57
1994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각연도.

따라서는 부실검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검사와는 다른 문제지만,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산물 수입부적합률을 보면 <표 5-1>과 같은데, 1994년의 부적합 물량은 4,225%이며, 금액으로는 12,752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부적합률은 건수면에서 3.10%, 물량면에서 1.61%, 금액면에서 2.31%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건수면에서 3~4%를, 물량면에서는 0.5~1.61%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1.43~2.57%를 나타내고 있다. 연별 변화로는 물량과 금액면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합률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는 점에서 축산물이나 식물 검역시 사용되는 폐기율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축산물 검역시 폐기율이 물량기준으로 0.08%이고(1993), 식물 검역시 폐기율도 물량기준으로 0.08%(199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수와 물량 및 금액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수보다 물량에서의 부적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때 부적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의 경우 건수보다는 낮으나 물량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가면에서는 전체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부적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품일 경우 부적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산물 수입 부적합 사례를 검사방법별로 보면 <표 5-2>와 같은데, 대

표 5-2 수산물 수입검사 방법별 부적합 실태, 1994

단위: 건, %, 천달러

구분	항 목	건 수	물 량	금 액	주 요 품 목
정밀 검사	VBN 초과	163(40.6)	1,777(42.1)	5,747(45.1)	냉동게, 낙지, 새우, 가오리
	생균수초과	145(36.2)	1,268(30.0)	4,546(35.6)	냉동게, 새우, 낙지, 피조개
	중금속초과	24(6.0)	277(6.6)	367(2.9)	활미꾸라지, 냉동논고동
	수분 초과	12(3.0)	53(1.3)	273(2.1)	마른해삼, 마른굴, 마른까나리
	염분 미달	2(0.5)	40(0.9)	128(1.0)	염장열빙어, 염장조기
	소 계	346(86.3)	3,415(80.8)	11,061(86.7)	
관능 검사	품 질 불 량	28(7.0)	312(7.4)	1,007(7.9)	염장해파리, 냉동쭈꾸미, 냉동게
	폐 사	21(5.2)	488(11.6)	644(5.1)	활미꾸라지, 활낙지, 활농어
	제 한 품 목	6(1.5)	10(0.2)	40(0.3)	냉동새우살, 냉장전갱이
	소 계	55(13.7)	810(19.2)	1,691(13.3)	
합계		401(100.0)	4,225(100.0)	12,752(100.0)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수입 검사업무편람, 1995.

부분 정밀검사에 의해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전체 부적합 건수의 86.3%, 물량의 80.8%, 금액의 86.7%가 정밀검사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능검사에 의한 부적합 사례는 건수면에서 13.7%, 물량면에서 19.2%, 금액면에서 13.3%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서는 정밀검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밀검사를 다시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선도측정단위인 VBN 초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균수 초과, 중금속 초과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VBN과 생균수 초과는 정밀검사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부적합 사례의 80% 가까이 점할 정도로 대표적인 부적합 사례가 되고 있다.

1.1.2. 품종별 및 수입내역별 부적합률 실태

수산물 수입검사의 부적합 사례를 품종별로 보면 <표 5-3>과 같다. 여기서는 부적합 사례 총량으로서는 냉동품이 가장 많으나, 전체 검사량에 대

표 5-3 품종별 수산물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건, %, 천달러

품 종	검사 실태(A)			부적합 실태(B)			부적합률(B/A)(%)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수	물량	금액
활어패류	1,417	5,925	25,173	38	668	836	2.68	11.27	3.32
신선냉장	3,995	5,180	28,642	15	4	24	0.38	0.08	0.08
냉 동 품	6,503	237,900	465,148	320	3,274	10,929	4.92	1.38	2.35
건 제 품	296	1,357	7,922	14	45	298	4.73	3.32	3.76
염 장 품	658	9,414	23,100	13	215	656	1.98	2.28	2.84
해조류등	81	2,426	2,487	1	19	9	1.23	0.78	0.36
합 계 (평균)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한 부적합량의 비율인 부적합률의 측면에서는 활어패류와 건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냉동품도 부적합률로서 보면 건수면에서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물량과 금액면에서는 전체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활어패류의 경우 건수면에서는 2.68%에 불과하나, 물량면에서 부적합률이 11.27%나 된다. 이는 소규모로 수입되는 활어패류의 부적합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활어패류에 대한 검사·검역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수입수산물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부적합 실태를 분석해 볼 때 일반내수용이 합작어획물이나 원자재용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내수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 3.59%, 물량면에서 2.50%, 금액면에서 3.55%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합작어획물의 부적합률은 건수 1.72%, 물량 0.28%, 금액 0.82%에 불과하다<표 5-4>. 일반내수용이란 의미는 국내외의 가격차이에 의해 순수하게 국내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반내수용의 부적합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수산물 수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표 5-4 수입내역별 수산물수입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건, %, 천달러

용 도	검사 실태(A)			부적합 실태(B)			부적합률(B/A)(%)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수	물량	금액
일반내수용	10,805	162,076	344,979	388	4,051	12,263	3.59	2.50	3.55
합작어획물	699	61,899	59,281	12	171	486	1.72	0.28	0.82
원 자 재	1,359	36,903	144,027	-	-	-	-	-	-
기 타	87	1,324	4,185	1	3	3	1.15	0.23	0.07
합 계 (평균)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1.1.3. 수입대상국별 부적합률 실태

한편 부적합 실태를 수입대상국가별로 보면 중국, 칠레,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부적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표 5-5>. 즉 중국에 있어서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는 1.38%이나 물량면에서는 7.29%, 금액면에서는 6.96%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 12.79%, 물량면에서 11.03%, 금액면에서 8.6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위생관념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개발 붐을 타고 급속히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이 가속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은 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6년과 1997년의 2개년에 완전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비선호도가 높은 고급

표 5-5 주요 수산물 수입대상국별 부적합 실태 및 부적합률, 1994

단위: 건, %, 천달러

국 가	검사실태(A)			부적합 실태(B)			부적합률(B/A)(%)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러 시 아	612	59,192	113,313	3	10	6	0.49	1.69	0.01
미 국	3,594	42,098	73,525	22	46	338	0.61	0.11	0.46
중 국	2,753	41,664	118,731	38	3,037	8,266	1.38	7.29	6.96
아르헨티나	236	41,220	35,727	-	-	-	-	-	-
뉴질랜드	677	11,597	15,545	1	0	0	0.15	0.00	0.00
일 본	865	7,129	32,933	8	131	670	0.92	1.84	2.03
칠 레	202	5,660	7,316	4	76	197	1.98	1.34	2.69
노르웨이	524	5,653	11,926	-	-	-	-	-	-
온두라스	14	5,288	5,012	-	-	-	-	-	-
태 국	472	5,196	23,135	11	128	394	2.33	2.46	1.70
인도네시아	350	5,146	12,158	10	44	239	2.86	0.86	1.97
베트남	477	3,780	13,411	61	417	1,159	12.79	11.03	8.64
캐나다	533	3,720	8,245	6	22	111	1.13	0.59	1.35
북한	24	2,655	1,583	-	-	-	-	-	-
기 타	1,617	22,204	79,912	57	314	1,372	3.53	1.41	1.72
합 계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어종에 대한 수입이 늘어난다고 볼 때,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증대는 국민건강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국내유통 수산물의 검사문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많은 부분이 선어 및 저차가공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차가공품의 종류로는 건제품, 염신장품, 해조제품 등이 포함된다. 1994년 현재의 선어 및 저차가공품 비율은 56.9%로서 1980년대 이후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5-6>.

한편 저차가공품에는 냉동품이 제외된 것으로서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쉽

표 5-6 연근해산 어획물의 선어 및 저차가공품 유통 실태

단위: 천%, %

구 분	1984	1992	1994
선어 및 저차가공품(A)	1,327	1,232	1,475
연근해 총어획량 (B)	2,252	2,265	2,590
선어·저차가공품 비율(A/B)	58.9	54.4	56.9

게 변질될 수 있는 냉동품까지 고려할 경우 문제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원양산 수산물은 냉동상태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상당부분도 냉동상태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매우 열악한 위생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내유통 수산물의 검사문제는 각종 질병의 발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콜레라, 비브리오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할 경우 수산업 생산이 매우 큰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잘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유통 수산물의 검사문제가 이 연구에서 제기된 것은 국내 수산업의 영향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식중독 등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UR SPS규정의 동등성원칙 등에 의하여 수산물의 수입검사·검역시 수출국에 의한 국제적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산물 수입검사·검역에 대한 각종 기준치는 국내산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위생수준과 형평성있는 수입검사·검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근해산 또는 국내반입되는 원양산어획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의 규정이 미비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수출용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는 상대수입국의 수입검역 기준강화로 방사능검사규정이 이미 1974년부터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으나,¹ 국내반입되는 원양산 어획물 또는 연근해산에 대

¹ 원양냉동수산물의 위생·방사능 검사규칙(1974년 농수산부령 제571호)

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도외시한 채 장차 국민건강을 이유로 방사능에 대한 검사강화는 수입대상국(수출국)의 강한 반발을 사 SPS 등에 대한 제소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2.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2.1. 수입검사·검역체제상의 문제

우리 나라의 검사·검역체제는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네가티브 시스템이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전품목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되, 필요에 따라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하는 방법으로서 검사·검역 대상건수와 물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장점이 부각되어 효과적이나 대상건수와 물량이 커지게 될 때에는 단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²

우리 나라 수산물무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가티브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으나, 최근 세계각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수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점차 단점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다<표 5-7>. 즉 수입규모가 커지고,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장비와 인력으로 모든 수입물량을 일일이 검사·검역해야 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은 과중한 업무부하를 초래하여 부실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또 SPS 협정에 따라 장차 위험평가제도의 도입도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은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도 검사·검역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² 조홍수·김동민, “WTO체제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농업정책연구』, 제 22권 제 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5. pp. 124~125.

표 5-7 검사·검역에 있어서 네가티브 시스템의 장단점

내 용	장 점	단 점
원칙적으로 전 세계, 전품목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되, 필요에 따라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	· 수입규모가 소량일 때 유리(업무가 용이) · 수입금지품목을 정할 때는 모든 병충해에 대한 위험평가를 한 후에 하는 것이나, 이 제도에 의할 때에는 과학적·기술적 축적없이도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쉽게 수입금지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 금지 병해충을 법적근거에 기초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 외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에 대응 용이	· 수입규모가 다양화되고, 다량일 경우 업무과다 초래 · SPS 협정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용이치 못함 · 위험평가제도와 같은 위험평가과정이 불필요하여 국가의 필요성 및 국익의 상충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없음.

2.2. 수출 및 수입검사 근거법의 이원화

현재 수산물 수입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고유업무는 수출수산물과 일부 국내소비용 수산물, 그리고 정부가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검사이다. 이는 수산물 검사의 근거법령인 수산물 검사법에 의한 업무분장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전통적인 업무분장내용으로서 국내소비용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는 1992년 이후에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검사소의 본래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수출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의 행정규제완화로 점차 검사대상품목수가 줄어들어, 현재 실질적인 검사대상품목수는 13개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이들 품목에 대한 자율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반해 1991년부터 위탁업무로 시작된 수산물 수입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기본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검사와 수입검

사의 일관된 시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수출수산물과 수입수산물에 대해 단순히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주된 업무가 다른 근거법에 의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산물 검사소가 검사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2.3. 제도의 미비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수산물검사소와 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검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업무가 쉽게 부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업무는 농림수산부령에 의한 ‘수산동·식물 이식송인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인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중 수산진흥원 직제에조차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수산진흥원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검역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없으며, 실제 담당부서인 병리과의 업무분장은 <표 5-8>과 같이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또 수산물검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업무는 그나마의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검역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검사·검역의 구분

표 5-8 수산진흥원 병리과의 업무분장

-
- 수산생물에 관한 병리학적 시험·연구
 - 수산생물에 관한 약리학적 시험·연구
 - 병원생물에 관한 분류학적 연구
 - 병원생물에 관한 생리·생태학적 연구
-

자료: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조 5항

이 모호한 인체질병 관련 검사 등 일부 검역 성격의 업무만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수산물 수입증가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활어패류의 수입이 대량화되고, 관상어 등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미비된 수산물 검역문제는 개방화시대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등 인접국으로부터 수입된 활어패류는 바로 소비지로 출하되지 않고, 축양 등에 의해 출하조절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수산동식물 이식송인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검역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수산물은 성어가 반입되기 때문에 어병 보균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물론 이들 수산물을 불법으로 축양하는 것은 수산업법의 위반사항이기는 하나, 법적 불법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어병의 발병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병의 발병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한 번에 대량폐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어류검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수산물을 통한 인체질병의 확산속도가 점차 빨라질 뿐 아니라, 어병의 발병지역이 광범위해지고, 대규모화해진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일대에서 크게 창궐하였던 이리드 바이러스의 확산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기존 검사·검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3.1. 검사·검역기능의 분리수행

기존 검사·검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중 수산물 검사·검역업무가 분리운

용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발휘가 곤란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검사의 경우 활어, 패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과 같은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산물검사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수산통·병조립, 어육연제품, 조미수산물과 같은 고차가공품에 대해서는 식품검역소가 주관하고 있어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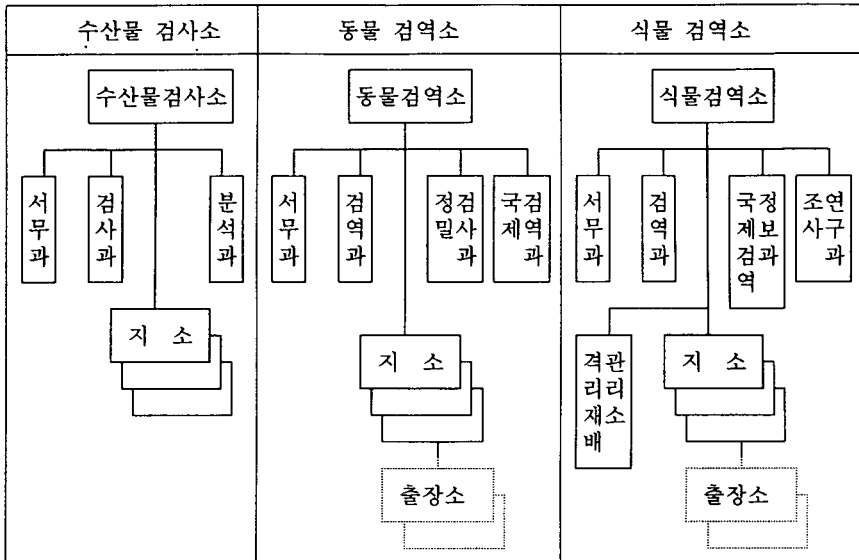
이러한 것은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에서 부분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 측면 외에 업무수행이라는 기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식품검역소와 수산물검사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산진흥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부 검역업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역의 경우 이식용 종묘에 대하여만 수산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어, 검사·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 수산물 검사소 기능 및 조직체계의 미비

수산물검사소의 기능 및 조직체계가 수출검사 위주로 되어 있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수산물검사소의 연혁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종래 수출검사가 주된 업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능도 수출검사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나, 여건변화에서 본 바와 같이 점차 수입수산물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산물검사소의 기능은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향후의 수산물검사는 국민 건강을 위주로 한 안전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기능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와 관련한 기획평가, 연구개발, 각종 국내외 정보분석 등 종합적인 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수산물 검사소 조직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즉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검사소의 기존 조직은 서무과, 검사과, 분석과의 세 과로만 이루어져 있어 업무가 매우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는 다른 검역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밀검사분야, 국제정보관련분야의 독립부서가 없음으로써 정밀분석이나 국제동향파악에 대한 업무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가 곤

그림 5-1 농수산물 검사·검역 기관별 조직도 비교



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3. 수산물 검사소의 시설 및 장비부족

과거 수산물 검사소의 업무는 수산물 수출검사가 주된 업무이었기에 검사의 중심은 검사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분석 위주의 검사보다 관능검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출장검사가 많았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늘어나고 정밀검사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분석업무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업무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분석실의 경우 장소가 낡거나 협소하여 원활한 분석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석실 준공연도가 20년 이상인 곳이 9개소로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분석실 시설면적이 20평 이하인 곳이 7개소로 전체의 58%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검사소의 소재지가 과거 수출검사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수입검사가 주로 된 최근에 와서는 수입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즉 수입수산물 통관지역과 검사기관의 소재지가 달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입검사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또 정밀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밀검사장비는 현저하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이 결과 몇 시간이면 분석가능한 업무도 기존의 장비로는 검사처리기간이 10~15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검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분석장비 보유 실태를 보면 전체 소요량에 대한 보유량의 비율은 55.5% 수준으로서 지금 보다 배 정도의 분석장비가 더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9>. 그러나 이것은 단순분석기기인 기타 항목의 보유율이 65.3%로 비교적 많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정밀분야별로 보면 4.3%~43.9%의 극히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병, 기생충 분야의 경우 총 소요량 47점 중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점에 불과하여 4.3%의 장비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검역관계업무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금속 분야는 15.6%, 균성물 분야는 23.5%, 방사능 분야는 33.3%의 낮은 보유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정밀검사분야의 장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3.4. 지소별 업무편중

수산물검사소의 업무영역이 수출수산물 검사에서 점차 수입수산물 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규모에 의해 설치되었던 지소별 검사원 1인당 업무량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어 전체 검사업무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건수면에서 볼 때 검사원 1인당 평균 연간검사건수는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평균이 144.7건인데, 지소별로는 본소의 185.4건이 최고인데 비해 최저는 포항의 12.0건으로 본소가 포항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또 물량면에서는 전국평균이 2,990.0%이므로, 최고는 부산의 6,688.8%인데

표 5-9 수산물 검사소의 정밀검사장비 소요량 및 보유량 실태

분야	소요량 (점)	보유량 (점)	보유율 (%)	미보유 또는 과부족한 주요장비명
중금속	64	10	15.6	·원자흡광광도계, 수은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마이크로웨이브분해기 등
균성물	34	8	23.5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항생물질분석기, 질량분석기* 등
방사능	9	3	33.3	·감마선분광기 등
어 병· 기생충	47	2	4.3	·전자현미경*, 입체현미경, 조직처리기*, 마이크로톰*, 초저온냉동고* 등
세 균	123	54	43.9	·위상차현미경, 인큐베이터, 저온인큐베이터, 워터바스, 고압증기멸균기, 코로나가운터, 크린벤치 등
독 성 물 질	11	4	36.4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기 타	809	528	65.3	·분광광도계, 드래프트체머, 디지털적외선수분기, 전자화확천칭, 분액여두진탕기 등
합 계	1,097	609	55.5	

* 미보유장비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비해 최저는 제주의 19.7% 밖에 되지 않아 무려 3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본소의 경우는 김포공항을 통한 고가품목의 수입물량이 많아 건수에 비해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업무가 많은 검사소로서는 본소, 인천, 완도, 부산, 통영 등을 들 수 있으며, 업무가 적은 검사소로서는 제주, 포항, 주문진 등을 들 수 있다.

표 5-10 본소 및 지소별 업무량 실태, 1994

단위: 건, %

지 역	수출검사		수입검사		합 계 (A)		검사 원수 (B)	검 사 원 당 업무량(A/B)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본 소	-	-	5,007	5,541	5,007	5,541	27 ¹	185.4 ¹	205.2 ¹
인 천	266	5,149	914	10,038	1,180	15,187	10	118.0	1,518.7
장 항	180	5,857	103	2,180	283	8,037	5	56.6	1,607.4
여 수	330	7,153	193	3,481	523	10,634	6	87.2	1,772.3
목 포	170	2,911	119	1,522	289	4,433	4	72.3	1,108.3
완 도	509	8,579	4	10	513	8,589	3	171.0	2,863.0
제 주	3	2	41	57	44	59	3	14.7	19.7
부 산	1,191	32,105	5,859	228,757	7,050	260,862	39	180.8	6,688.8
통 영	513	11,855	674	8,000	1,187	19,855	9	131.9	2,206.1
포 항	67	2,298	5	1,287	72	3,585	6	12.0	597.5
후 포	502	7,288	28	1,300	530	8,588	- ²	- ²	- ²
주문진	106	1,441	3	29	109	1,470	4	27.3	367.5
합 계	3,837	84,638	12,950	262,202	16,787	346,840	116	144.7	2,990.0

¹ 1995년 서울지소 신설.² 1995년 후포지소 폐소.

4. 기타 문제

4.1. 전문성 결여

무역자유화가 진전되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수입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국은 국민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한 검사·검역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검사·검역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검사·검역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 향후 검사·검역업무는 매우 전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산물 수입검사·검역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

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일부 전문분석 검사요원이 매우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단순한 관능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 외에 전문분석요원 중 일반세균, 중금속 전문분석요원은 현재의 업무하에서는 비교적 충분하게 확보되었으나, 방사능, 항균성물질, 패독분야 등의 전문분석요원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 <표 5-11>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부족한 정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방사능, 항균성물질 등 7개 분야의 총 필요인원이 122명인데 비해 1995년 현재 확보인원은 47명으로서 확보율은 38.5%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 중 어병과 유기독성물질분야는 각각 1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어병분야의 전문분석요원이 전무한 것은 수산물의 검역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패독분야의 경우도 복어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독성어의 검사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건강차원에서 매우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HACCP, EU의 수산물 위생 관련제도, OIE에 의한 수생동물의 검역문제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문화된 검사·검역 인력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5-11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실태(1995.9.현재)

분 야	필 요 인 원(명)	확 보 인 원(명)	확 보 율 (%)
방 사 능	10	4	40.0
항 균 성 물 질	20	15	75.0
기 생 충	24	10	41.7
패 독	24	6	25.0
어 병	10	-	-
유 기 독 성 물 질	10	-	-
식 품 첨 가 물	24	12	50.0
합 계	122	47	38.5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4.2. 국제 동향분석 미흡

향후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수산물 검사·검역체제는 다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WTO의 SPS규정, EU의 수산물 위생 관련규정, 미국 등의 HACCP 제도, OIE의 수생동물 검역 관련규정 등 많은 국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업무관장 조직이 미비하고 수산물 위생과 관련된 대내외 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수출수산물 공장등록제 정보를 민간기업을 통하여 입수한다거나, 해외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 입수가 잘 안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각국의 수산물 검사기준이나 원산지 정보 등에 관한 자료부족뿐만 아니라, 국내검사제도 및 관련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를 판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4.3. 기타문제

수산물의 수입검사에 있어서 선통관, 후검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활어·선어·패류 등 저장성이 없는 수산물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를 악용하여 저질품이 수입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관광용 식자재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과거 관광용 식자재는 신선한 고급품이 많아 빠른 통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관광용 식자재로 수입되는 양이 많아지고, 순수 국내소비용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소비용과 관광용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관광용식자재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게 되었다. 즉 다른 수입식품이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광용 식자재의 서류검사만에 의한 검사완료는 검사업무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6 장

수산물 검사·검역업무 개선방안

1. 검사·검역체제의 개편

1.1. 포지티브 시스템 채택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물의 종류 및 국가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입검사 및 검역제도를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평가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 및 국익의 상응도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선진국에 의해 식품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6-1>.

한편 포지티브 시스템은 수산물 수입검사·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농산물 검사·검역도 현재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시스템 논의는 농산물 검사·검역에 있어서도 필요한 문제가

표 6-1 포지티브 시스템의 장단점

내 용	장 점	단 점
원칙적으로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해 규제를 둔 다음 위험평가에 따라 금지품목과 지역을 해제함.	·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질 때 유리(업무가 용이) · 철저한 검사·검역이 가능 · SPS 협정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운영이 용이 · 위험평가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 및 국익의 상충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음.	· 국내 병충해의 분포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외 병해충의 특성, 분포, 방제방법 등 과학적·기술적 지식축적과 이를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필요함. · 금지병해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음.

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이 동시에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산물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수산물 검사·검역기관의 일원화

수산물 검역기능이 국립수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물진흥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수산물검사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활어패류의 수입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와 검역의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산물 검사소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진흥원의 경우 수산진흥원 본원과 일부 수산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하부기관이 없어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역업무가 강화될 경우 각종 행정력의 발휘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산물검

사소가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와 더불어 모든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도 병행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실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사대상이 됨으로써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향후 SPS규정에서의 동등성 원칙에 대한 제소를 방지하고, 수출수산물에 있어서 HACCP 제도나 EU의 생산과 위생검사 관련제도에 의해 받게 되는 국내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시요령으로서 국내유통수산물 중 국내산에 대해서 동해안은 방사능검사, 서·남해안은 질병 및 중금속검사 등 해역별로 중점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및 원양산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와 결부시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산물 검사·검역 관련 제도 개선

2.1. 수입수산물의 검사·검역 근거 마련

이식용 수산물과 활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검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산물 검사법에 이식용 수산물과 활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삽입하여 수산물 검역의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동법의 내용에 검역관의 권한부여, 위법자에 대한 제재조치, 병충해 감염품종에 대한 처분 조치규정을 삽입하여 검역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한다.

두번째로 기존의 수산물 수입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에 근거를 두

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산물 수입검사의 근거법을 수산물검사법에 수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檢査審議委員會의 설치, 운용이 가능하여 수산물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 검사심의위원회는 수산물 수입검사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수산물 수입검사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설령 수산물 수입검사의 근거법이 수산물검사법에 수용되지 못하고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전에 수입수산물 검사표준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수산물 수입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2.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근거 마련

수산물검사법에 국내유통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UR SPS 협정의 동등성요구 등에 대비하도록 한다. 즉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의 근거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차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기능을 강화할 경우 수출국들은 SPS 협정의 동등성 조항을 들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기능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근거가 마련되고, 검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생산어업자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생산계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반대입장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내 유통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위생검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체위해나 식품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수산물, 또는 오염의 의심이 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부분적인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떨던간에 원양어획물의 국내반입과 수입수산물의 국내반입의 사

이에 생산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품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내유통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2.3. 위험평가제도 도입

선진국에 대한 수출수산물의 위생검사는 매우 강화되고 있다. 즉 미·일의 HACCP 제도, EU의 생산과 위생검사 관련제도 등의 시행으로 위생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SPS의 위험평가제도를 조기도입하여 수산물검사소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결국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3. 수산물 검사·검역 기능 강화

3.1. 인력 확충

점차 수산물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검사·검역업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단순한 방법에 의한 추정이기기는 하지만, 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이 100%에 이르게 되는 1997년의 경우 수산물 수입 자유화 품목은 354품목으로 늘어나며, 교역국가수도 83개 국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입검사 품종수도 1994년의 420품종에서 480여 품종으로 늘어날 것이며, 검사건수도 1994년도의 1.4~4.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산물 검사업무량의 추정은 비교적 단순한 추세식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2장 <표 3-7, 표 3-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수급격차를 고려한다면,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업

표 6-2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검사업무량의 변화 및 추정량

구 분	1991	1994	1997(추정치)
자 유 화 율 (%)	68.7	87.0	100.0
자유화 품목 (개)	235	308	354
교역 국가수 (개)	31	72	83 ¹
검사 품종수 (개)	115	420	483 ¹
검 사 건 수 (건)	1,065	12,950	17,500 ² ~ 63,700 ³

¹ 자유화품목수에 비례하여 추정

² 검사물량을 추세식에 의해 추정한 후 건당물량을 1994년 수준으로 나누어 줌.

³ 검사물량과 검사건수를 모두 추세식에 의해 추정

무량은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 검사건수의 증가는 수산물 검사소 검사원들의 급격한 업무과중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검사·검역업무와 연관된 부수업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수산물 검사업무와는 별개로 수산물검사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입유통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품질인증제의 실시,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의 실시, 미·일의 HACCP 제도에 영향받은 국내 HACCP 제도의 도입가능성 등에 따라 수산물 검사소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검사원의 업무량 자체가 과중한 상태에 있음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예상되는 업무부하는 매우 과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업무에 대한 과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을 감안할 때 일반검사원에 대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검사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각 지소의 검사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해야 함과 더불어 본소에는 전산직 등 신규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단순업무에 대한 부하경감도 효율적 검사업무 수행이란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향후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특히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인력이 시급히 충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분야 중 방사능, 항균성, 기생충, 패독, 어병, 유기독성물질, 식

품첨가물분야에 대한 전문검사인력이 전무하거나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와 같은 인력 확충은 장기적으로 검역업무가 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게 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검역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보강과 더불어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검사소에 대한 인력확충시 더불어 언급되어야 할 것은 검역과 관련한 전문분야, 즉 기생충, 어병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방안이다. 이들 전문가는 어병 기사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지만, 매년 배출되는 어병기사수는 매우 적은 상태에 있다. 이는 어병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수가 적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어병기사시험이 너무 어려워 소수의 응시생만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적정수의 어병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병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어병관련 공부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국제동향분석 및 검사·검역 정보체계의 강화

향후 농수산물의 무역에 있어 국제간의 검사·검역업무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거래에서의 검사·검역업무 뿐만 아니라 EU의 새로운 수산물 위생검사제도의 도입과,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견되는 HACCP 제도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검사업무가 수출국의 위생상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할 정도로 검사업무가 매우 적극성을 띠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 수산물 검역업무에 있어서도 OIE의 수생동물과 관련된 어병 관리지침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병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업무가 단순히 우리 나라 내부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향후의 검사·검역업무는 국제동향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수산물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산물 검사소의 역할에는 국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을 이루고,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내 수산물 수출입업자 또는 생산어민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수산물검사소의 국제동향분석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검사·검역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UR SPS규정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검사업무에는 검사기준의 과학적 근거제시, 투명성 제시 등 의무조항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요구가 있을시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에 제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검역의 정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예시해 보면 관세청 등 수입관련 부처와의 전자문서화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 검색 시스템 개발, 국내외 병충해 및 위해물질 관리 시스템 개발, 국제 검사·검역 규격의 전산화 S/W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3.3. 장비보강 및 현대화

현대화된 장비보강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검역업무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첨단 분석장비는 대체로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수입검사 의뢰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즉 수산물은 그 상품 특성상 부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산물의 검사·검역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시 분석기간의 과다로 통관지연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검사의뢰인들과의 마찰도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이 결과 검사의뢰인들과 검사원들 사이에는 많은 불신의 벽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검사의뢰인들과 검사원들 간의 결탁에 의해 부실검사의 의혹을 배제할 수도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사·검역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장비보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물

검사·검역분야의 장비보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병 및 기생충, 중금속, 균성물에 대한 정밀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이들 분야의 장비현대화율이 다른 장비에 비해 특히 낮기 때문이다. 이들 장비에 대한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방사능, 세균, 유기독성물질 등에 대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3.4. 수산물 검사소의 조직체계정비

3.4.1. 본소의 조직체계 정비

본소의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분석 담당부서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밀분석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 내용에 따라서는 비교적 긴 분석기간(1~10일)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분야의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설되는 정밀분석부서에서는 중금속, 방사능 등 정밀분석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수업무로서 국제동향 분석 업무를 병행시키도록 한다. 이는 국제동향분석업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정밀분석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국제동향분석 업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산물 수입검사와 검역이 일원화된다고 가정할 때 수산물 검역을 위한 제반 업무는 수산물 검사소 내에 검역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수산생물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수출입 되는 수산생물 및 동 제품에 대해서 권한있는 당국이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국제위생(검역)증명서 발급과 각국의 질병조사 보고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명서발급과 질병조사보고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식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활어패류 등에 대한 국내 검역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역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신설되는 검역전담부서에서는 수산물검역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각지소에는 검역전담요원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이 때 검역인력 교육 및 새로운 어병에 대한 검역법 개발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식용 수산물 검역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수산물진흥원 병리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3.4.2. 지소의 조직체계 정비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검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부 지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대부분의 지소위치가 수출수산물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차 업무의 성격이 수산물 수입검사 쪽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지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장항지소를 수입항이 있는 군산으로 옮긴다든가, 주문진지소를 최근 신항구가 들어선 동해시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이다.

지소의 조직체계 정비에 있어서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소간 인원 조정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소간 검사업무량의 차이로 인해 검사원들의 인력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소간 검사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5년 1차 조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소간 업무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표 5-10>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원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제5장의 <표 5-10>의 결과를 기준으로 장항, 제주, 포항, 주문진의 경우 검사원 1인당 검사업무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검사원수를 삭감하는 대신 부산, 통영의 경우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번째로는 지소별 거점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석장비 현대화와 인력 확충과도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모든 지소의 장비와 인력배치를 한꺼번에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편으로 연계성이 강한 지

표 6-3 지소별 거점화 방안

분 야	거 점 지소	담당 지소
중금속, 항균성 물질 및 기타	본소	주문진, 장항, 제주, 서울
	부산	포항
	인천	-
	여수	목포, 완도
	충무	-
방사능 검사	본소	주문진, 장항, 제주, 인천, 목포, 서울
	부산	포항
	충무	-
	여수	완도
일 반 검 사	전지소에서 담당	

역끼리 거점화를 실시하여 거점지소에 중점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검사·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검사는 전지소에서 담당하되, 중금속, 항균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본소, 부산, 인천, 여수, 충무에서 중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방사능검사는 동남해안 중심으로 본소, 부산, 충무, 여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서 본소에서 담당할 지소로는 인근 지역과 교통이 불편하여 항공편으로 연계가 용이한 주문진, 장항, 제주, 포 등지를 연계시키도록 한다.

3.5. 검사업무의 형평성고려

현재 서류검사로만 통관이 되고 있는 관광식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산물과 같이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는 수입개방 품목수가 늘어나고, 고급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식자재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양이 늘어나 검사업무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물 검역업무가 본격화될 경우 관광식자재로 수입되는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검역과정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광식자재도 일반수산물과 같이 형평성있는 검사·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빈

면

부 록

부록 1. UR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SPS)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록 2. 국제 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이용에 관한 지침

부록 3. EU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지침

빈

면

부 록 1

UR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SPS)의 적용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조건하의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내의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며,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국회원국들이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접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며,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와 관련된 1994년도 GATT규정, 특히 제20조 (b)항¹의 규정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일 반 규 정

1.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적용된다. 동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3.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동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원리

¹ 이 협정하에서 제 20조 (b)항이라 함은 제 20조의 도입부도 포함한다.

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 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1994년도 GATT규정, 특히 제20조 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조 화

1.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2.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 수준의 결과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²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수준과

상당한 보호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한다.

4.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체제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내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자원 범위내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제12조 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

제 4 조 동 등 성

1. 수출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자기 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정당한 접근이 부여된다.
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² 제3조 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제 5 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 결정

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
4.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동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6. 제3조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조치가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³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재검토한다.
8.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자기 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조치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동 해명은 동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제 6 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의 위생 및 검역규제상의 특징에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어

³ 제5조제6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저하되는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다.

는 지역의 위생 및 검역규제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률,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을 고려한다.

2.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및 검역규제 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한다.
3. 회원국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7 조 투 명 성

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8 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 나라의 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기 술 지 원

1.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동 지원은 특히 가공기술, 국가규제기관 설치를 포함한 연구 및 하부구조 분야에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에 적응 및 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별 및 차등대우

1.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필요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이 새로운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단계적인 도입 여지를 허용하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3.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동 국가의 재정, 무역 및 개발수준을 참작하여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협 의 및 분쟁 해결

1.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과 MTO의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협정이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관련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 리

1. 이 협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 규제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정의 목적, 특히 조화와 관련된 목적의 증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기준, 지

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의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및 통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및 연구를 후원한다.

3. 이 협정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확보하고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사무국 등의 위생 및 검역규제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4.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위원회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또는 검역규제 조치에 관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 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적용하거나 수입상품이 자기 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하여 부합하여야 하는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특히 동 기준이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등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의사를 표명한 후, 자기 나라의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2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동 변경에 대한 사유를 사무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 특히 통보절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원국의 주도에 의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된 기준사용철회에 대한 해명의 근거를 포함하여 특정 기준, 지침 또는 권고와 관련된 특정사안을 조사할 것을 관련 국제기구 및 하부기관

에 요청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특히 이 협정의 이행으로 얻어진 경험을 고려하여, 이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3 조 이 행

회원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 및 기구를 공식화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 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 14 조 최 종 조 항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나라의 기존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제5조 제8항과 제7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적용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

부 속 서 1 정 의⁴

1. 위생 및 검역규제 :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 다. 동물, 식물 또는 동·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기타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조치

위생 및 검역규제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구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최종제품의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 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

⁴ 이 정의의 목적상, “동물”은 어류 및 야생동물군을 포함하며, “식물”은 산림의 수목 및 야생식물군을 포함하며, “해충”은 잡초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은 농약과 수의약품의 잔류물 및 외부물질을 포함한다.

2. 조화 : 상이한 회원국에 의한 공동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수립, 인정 및 적용
3.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 가. 식품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물질, 분석 및 표본 추출방법, 위생관행의 규약 및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기준, 지침 및 권고
 - 나. 동물위생 및 동물성 전염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기준, 지침 및 권고
 - 다.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 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와의 협조와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 라. 위 기구의 업무대상이 아닌 사항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발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적절한 기준, 지침 및 권고로서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것
4. 위험평가 :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이나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식품 · 음료 및 사료에서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
5.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⁵ : 자기 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
6. 병해충 안전지역⁶ -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⁵ 많은 회원국들은 달리 이 개념을 “수용가능한 위험수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⁶ 병해충 안전지역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나, 당해 병해충을 제한 또는 박멸하기 위한, 보호지대, 감시지대 및 완충지대의 설정 등의 지역 방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 - 특정국가의 부분 또는 수개 국가의 일부나 전체를 포함하는 지리적인 지역내 여부에 관계없이 - 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동 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7.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 :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주무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

부 속 서 2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의 투명성

규정의 공표

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⁷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한다.
2.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 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한다.

문 의 처

3.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

- 가. 자기 나라 영토내에서 채택 또는 제안된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
- 나. 자기 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 생산

⁷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법령 또는 명령과 같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및 검역처리, 농약 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다.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수준의 판정
라.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체제 및 이 협정의 대
상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약정에의 회원국 또는 회원국
영토내의 관련기구의 회원지위 및 참여, 그리고 동 협정문 및 약정문
4.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동 사본은 배
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의 국민⁸에 대해서와 동일한 가격(가격
지불이 필요한 경우)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통보절차

5.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가. 이해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
나.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동규정의 대상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
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기에 행하여진다.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
라.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
을 논의하고 동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합리

⁸ 이 협정에서 “국민”이라고 함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인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
우, 동 관세영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사
업장을 갖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6. 그러나 회원국에 대해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속서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동 회원국은
 - 가. 사무국을 통하여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특정규정 및 대상 품목을 동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
 - 다.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함과 동시에 논의결과를 검토한다.
7.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8. 선진국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고의 대상인 문서의 사본 및 문서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한다.
9.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서 사본을 신속히 배포하며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 관심품목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10. 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국내차원에서의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일반적인 유보

11.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이 부속서 제8항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초안의 상세사항, 사본의 제공 및 문안의 공표
 - 나. 공개시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 법률의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의 공개

부 속 서 3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⁹

1.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부당한 지연없이 절차가 행하여지도록 해야 한다.
 - 나. 각 절차의 기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요청시 예상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의 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요시 수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절차의 진행단계를 통보한다.
 - 다. 정보의 요구는 첨가제 사용의 승인이나 식품·음료 및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라. 통제, 검사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은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된다.
 - 마. 상품의 개별적인 건본의 통제, 검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바. 상품수입의 절차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국내의 동종상품 또는

⁹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에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증명을 위한 절차가 포함된다.

그밖의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절차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수입품의 표본선정시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 적용되는 규정에 비추어 방역 및 검사 이후 상품의 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절차는 동 상품이 관련 규정을 계속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신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자. 이러한 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수입회원국이 식품·음료 및 사료내의 식품첨가제 사용승인제도 또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시, 수입국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이유로 수입국 국내 시장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접근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를 명시하는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통제담당기관에서 통제 및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 나라 영토 내에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부 록 2

국제 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이용에 관한 지침

1. 서 론

1. 본 지침의 목적은 수의행정 및 기타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제무역을 위한 수역 위생증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제 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요 수생동물 질병의 진단을 위해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생동물의 위생관리에 대한 통일된 접근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증명서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생동물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한 증명서는 표준화된 방법과 고도의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증명서는 무역을 촉진하는 수단이며, 불필요한 수생동물 위생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필요시에는 어류규약에 규정된 수생동물 위생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 규약의 어류질병 통제조치를 다루는 각 장은 수의학 지식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4.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OIE에 통보하여야 할 질병에 대해 일반적으로 증명서가 요구된다. 포유동물, 조류 그리고 벌의 경우에는 OIE 통보대상 질병이 A항목(심각하고 급속한 전염의 잠재성, 심각한 사회경제적 또는 공중보건상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그리고 국제무역상 중요성을

갖는 질병)과 B항목(국내에서 사회·경제적 또는 공중보건상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국제무역상 중요성을 갖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수생동물의 질병 성격과 교역규모를 고려해 볼 때, 수생동물의 질병은 A항목 질병으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규약에서 “OIE에 통보하여야 할 질병”이라는 용어는 B항목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5.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규약상의 주요 용어 및 문구는 1.1절에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증명서에 이들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례가 본 규약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진단요령은 OIE에 통보하여야 하는 수생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세계 양식산업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질병을 다루는 장은 문제의 질병에 대하여 임상단계에서 수행할 진단절차에 대한 요약정보와 그에 이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생물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참조항목이 있다.
7. 본 규약 제3절은 수역행정 및 수생동물과 동제품의 국제교역에 관련된 권한있는 당국의 개개인의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역당국은 무역에 직접 관련된 인사들을 위하여 본 규약의 사본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진단실험 관계자들은 진단요령의 기술적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8. OIE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의 질병에 대한 OIE연구소 목록이 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2. 세계 동물 위생(OIE)과 FAO/OIE/WHO 동물위생연감

이러한 연례 간행물은, 수역행정당국에 대하여 상품수출국에 관한 질병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수입국가가 배척하고자 하는 외래질병이나, 국가적 통제 또는 퇴치 계획이 있는 질병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적절한 수생동물 건강 또는 위생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OIE 및 FAO 발행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통계나 기타 사실적 정보에 따라 보완될 수 있고 또한 수출국의 수역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3. 국제 위생 증명서

1. 국제 수생동물 위생증명서와 국제 위생증명서는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국가에서 만연하는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촉진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다. 일반적 규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질병의 통제나 퇴치계획이 수입국가에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병원균이 도입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와 같은 경우이다.
2. 모든 국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과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재자의 성명과 직위는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증명서는 공무용 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되어야 한다. 증명서(안)는 사용되기 전에 수입국가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제3국을 통한 이전(transit)에 대하여는 관련국이 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누구도 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는 것 또는 감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국제 위생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실험결과 등의 사실을 수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한 관련서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할 수 있다.

4. 수입자와 수출자를 위한 지침

요구사항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입자 및 수출자를 위한 지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침은 수입, 수출전(pre-export), 수송(transit), 하역, 수입후 요구사항, 법적 의무 및 시행절차에 대한 모든 조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출업자들은 수생동물 및 동 제품의 항공수송에 대한 관련 IATA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침은 목적지까지 위탁물과 함께 수송될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위생증명서 요구의 상세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부 록 3

EU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제 I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본 지침은 식용 수산물의 가공과 시장출하에 관련된 위생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수산물(Fishery products) : 수산물이란 전 해양이나 담수 동물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하며, 그 알을 포함하되 수생 포유동물, 개구리 및 기타 EC공동체 규칙으로 관할하는 수생 동물은 제외한다.
2. 양식수산물(Aquaculture products) : 양식수산물이란 모든 어획물이 인위적인 조건하에서 부화되어 시장에 식료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성장시킨 것을 말한다. 또한, 해수나 담수어류 또는 갑각류가 자연상태에서 어획되었다 하더라도 치어 및 그리고 식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시킨 것도 양식 수산물로 간주한다. 어류나 갑각류가 자연에서 상품규격으로 자란 것이 어획되어 후에 판매될 때까지 살려 둔 것은 크거나 무게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만 하였을 경우에는 양식 수산물로 간주할 수 없다.
3. 냉각(Chilling) : 냉각이란 어획물을 얼음이 녹는 온도(0℃) 가까이 냉

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4. 선어(Fresh products) : 선어란 원형어체 또는 처리된 어획물을 말하며, 진공포장이나 냉각처리한 것일 뿐 품질보존 처리가 아닌 자연상태의 공기를 일부 변형시켜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5. 처리제품(Prepared products) : 처리제품이란 어획물을 내장제거, 두부절단, 채썰기, 포뜨기, 고기갈이와 같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상태의 처리를 가한 것을 말한다.
6.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 : 가공제품이란 어획물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 즉, 가열, 훈연, 염적, 건조 또는 마리네이트 처리 등의 처리를 가한 것을 말한다. 다른 식료품과 혼합 여부에 관계없이 냉각하였거나 동결시킨 것, 또는 이들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배합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7. 보장(Preserve) : 보장이란 어떤 처리 제품을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어떤 미생물도 번식을 억제하거나 불활성화할 때까지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8. 냉동제품(Frozen products) : 냉동제품이란 어떤 어획물이 동결되어 品溫이 안정된 후의 제품 중심온도가 -18°C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처리된 것
9. 포장(Packing) : 포장이란 수산물을 포장지, 용기 또는 기타 적합한 장치로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주: 수송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
10. 하구(Batch) : 하구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하에서 얻어진 어획물의 일정한 분량을 의미한다.
11. 탁송품(Consignment) : 탁송이란 국내 행선지의 한 사람 또는 많은 소비자에게 한 가지 수송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어획물의 한 분량을 말한다.
12. 수송수단(Means of transport) : 수송수단이란 자동차차량, 철도차량 그리고 항공기 및 선박의 창고 안에 상품을 쟁겨두는 부분과 육·해

· 공중을 이용하여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말한다.

13. 관계관청(Competent authority) : 관계 관청이란 동물검역 업무를 취급하는 회원국의 중앙기관 또는 그 권한을 대리하는 관청을 말한다.
14. 시설(Establishment) : 시설이란 수산물의 처리, 가공, 냉각, 동결, 포장,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를 통칭한다. 단순히 진열하여 도매하고 있는 경매 및 도매시장은 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15. 시장출하(Placing on the market) : 시장출하란 EC내의 시장에 판매, 매매제의, 매매, 배달 또는 기타 형태의 출하를 위하여 보유 또는 진열하는 것을 말하며, 소매거래의 점검을 위하여 각 국별 규칙에 규제되어 있는 위생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소매나, 어민이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소량을 지방 시장에 직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16. 수입(Importation) : 수입이란 제3국으로부터 어획물을 EC 역내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17. 청정해수(Clean seawater) : 청정해수란 미생물학적인 오염이나 위해 물질, 또는 어획물의 위생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유독 해양프랑크톤 등에 오염되지 않은 해수나 기수를 말하며, 본 지침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8. 가공선박(Factory vessel) : 가공선박이란 선상에서 수산물을 반입 이후의 필렛작업(filleting), 슬라이스, 탈피, 잘게 썰기(Mincing), 동결 또는 가공작업중 하나 또 그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가공선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선상에서 단순히 새우류와 연체류를 조리(cook)하는 어선
 - 선내에서 단순 동결을 수행하는 어선

제 3 조 본 지침은 식용 수산물의 가공과 시장출하에 관련된 위생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국 연안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시장에 출하할 때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 (a) 어획물은 빨리

- i) EC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위생규칙에 준하여 어획되어야 하고, 선내에서 피빼기, 절두, 내장제거, 지느러미제거, 냉각 또는 동결 등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EC 집행위원회는 1992년 10월 1일 이전에 그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ii) 필요시 제7조와 부칙 제1장의 요건에 따라 승인을 받아 가공선박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새우류와 연체류의 선내조리(Cooking)는 부칙 제Ⅲ장 제1절 (5) 또는 제Ⅳ장 4절 (7)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때의 선박은 관계관청에 특별히 등록되어야 한다.
 - (b) 양륙 중이나 양륙 후의 어획물은 부칙 제Ⅱ장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c) 수산물은 제7조에 따라, 그리고 부칙 제Ⅲ장 및 Ⅳ장의 요건에 맞추어 시설(Establishment) 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포장(주 : 수송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 보호하는 조치 포함), 전처리, 가공, 동결, 해동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관계관청은 부칙 제Ⅱ장 제2절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이 허가된 시설이나 등록된 위판장 또는 도매시장으로 즉시 수송하여 거기서 검사받도록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d) 관계관청은 부칙 제Ⅴ장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 수산물은 부칙 제Ⅵ장에 따라 포장(수송용)되어야 한다.
 - (f) 수산물에는 부칙 제Ⅶ장에 따라 식별 마크가 주어져야 한다
 - (g) 수산물은 부칙 제Ⅷ장에 따라 만족스러운 위생조건하에서 저장 및 운송되어야 한다
2. 기술적 및 상업적 견지에서 내장제거가 가능할 경우에는 동 작업은 수산물이 어획되거나 양륙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양식 수산물의 시장출하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 (a) 양식수산물은 적합한 위생조건하에서 도살되어야 한다.

양식수산물은 땅이나 진흙, 배설물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도살후 즉시 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각시켜야 한다.

(b) 양식수산물은 이에 더하여 1의 (c)에서 (g)까지에 규정된 요건들에 충족되어야 한다.

4. (a) 생2매패 연체류의 시장출하는 생2매패 연체류의 시장 출하와 가공에 관한 위생조건을 규정한 1991년 7월 15일자 위원회 지침 91/492/EEC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b) 만약 가공될 경우 2매패 연체류는 위 (a)항의 조건에 더하여 1의 (c)에서 (g)까지의 요건들에 충족되어야 한다.

제 4 조 수산물을 산 채로 시장에 출하할 때는 항상 최적 생존 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제 5 조 다음과 같은 제품의 시장출하를 금한다.

- 독성을 가진 어족: 개복치과(Tetraodontidae), 수염대구과(Molidae), 가시복과(Diodontidae), 청복과(Canthigasteridae)
 - 시구아테라독(Ciguatera toxins)이나 근육마비독(Muscle-paralysing toxins)과 같은 생체 독소를 가진 어류
- 이곳에서 언급된 어종의 세부 요건과 분석검사 방법은 제15조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1. 회원국은 시설(주: 수산물 처리가공 보관하는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책임자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어획물의 각 처리가공 단계별, 본 지침의 세부내역이 잘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동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초로 하여 그 자신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각 가공 과정에 이용되고 있는 가공공장의 임계 온도 확인
- 동 임계온도에 대한 검색 및 점검방법의 설정 및 이행
- 승인된 실험실에서 관계관이 공장청소, 소독방법의 점검을 목적으로

로, 또는 본 지침에 의거 설정된 표준에 대한 적응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시료의 채취

○ 기록된 자료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加工先導点を 지을 수 없도록 기재한 등록된 기록의 보존

2. 만약 책임자 자신의 점검결과에서 드러났거나, 아니면 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위생을 해칠 위험이 드러났거나, 별도의 제안이 있어 책임자가 처분하였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침 89/662/EEC의 제3조 4항에 규정된 조치에 구애됨이 없이 공식적인 감시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기 1의 두번째 항목에 대한 적용규칙은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1. 관계관청은 공장에서 수행한 활동회수를 고려하여 그 시설이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번 입증되면 동 시설을 승인하여야 한다.

동 승인은 동 시설이 기히 승인 받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

관계관청은 시설이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와 관련하여 실시한 점검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관계관청은 경매장과 도매시장 시설이 기히 본 지침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매 및 도매시장은 등록하여 두어야 한다.

2. 여하튼 특별 조건의 지배하에 있는 가공선박 및 시설이나 경매 또는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수산제품이 본 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생표준과 일치할 경우에, 회원국들은 부칙 제 I 장에서 IV장까지에 규정한 장비 및 구조와 관련된 요구조건을 위하여 가공선박과 시설, 경매 및 도매시장에 대하여 19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히 조업하고 있으면

서 1992년 7월 1일 이전에 국별 관계기간에 조건감면 신청서를 정히 제출한 가공선박과 가공공장, 경매 및 도매시장에 한하여 조건감면이 승인될 수 있다(원문이 1991. 9. 24일자 EC관보에 게재된 것임을 참고).

동 조건감면 신청서에는 작업계획서와 그들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C로부터 재정지원이 요구될 경우, 본 지침의 요건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관계관청은 그들이 승인한 각 시설에 공식번호를 부여하여 시설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 EC 집행위원회에 허가된 가공공장 명단과 그 이후의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동 명단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4. (가공)시설의 검사와 점검은 시설 어느 곳이든 항상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책임 하에 본 지침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 검사와 점검에서 본 지침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관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1, 3 및 4항목은 가공선박에도 적용한다.

6. 1 및 4항목은 도매시장과 공매시장에도 적용한다.

제 8 조

1. EC 집행위원회 전문가는 EC 회원국 관계 관청과 협력하여 본 지침의 공평한 적용이 보장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들은 특히 가공시설들이 본 지침의 요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검사가 실시되면 전문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C 집행위원회는 동 조사결과를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이행준비는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9 조

1. 특히 수산물이 도착한 회원국이 시행한 검사 이후 취할 활동이나, 그 기관에 관하여, 그리고 이행하여야 할 보존 조치에 관하여는 식용으로 제공한 수산물에 관한 지침 89/662/EEC에 규정된 규칙들을 적용한다.
2. 지침 89/662/EC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부칙 A에 다음 문항을 추가한다.
 - 제품의 위생조건과 수산물의 시장출하를 규정한 1991년 7월 22일자 위원회지침 91/493/EEC(EC 관보No. L 268, 1991.9.24일자, 9.15)
 - (b) 부칙서 B에서 다음 문항을 삭제한다.
 - 식용수산물

제Ⅱ장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제 10 조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적용하는 조항들은 최소한 EC제품에 대한 제품 통제와 시장 출하 규제 조항들과 동등해야 한다.

제3국기를 계양한 어선이 자국 주위에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하여는 지침 90/675/EEC의 제18(3)항에 규정한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1. 모든 제3국 그룹의 수산물은 제3국의 위생상태에 따라 제15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특별 수입조건을 필히 충족시켜야 된다.
 2. 수입조건의 설정을 승인하기 위하여 또한 EC로 탁송되는 수산물의 가공조건, 저장 및 수송조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EC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회원국의 전문가들에 의거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사를 위임받은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회원국의 제안을 받아 EC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 이러한 검사는 EC 집행위원회를 대신하여 행해지며 동 집행위원회가

발생 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동 검사의 회수와 절차는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수산물의 수입조건을 확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별평가를 시행한다.

- (a) 제3국의 관계법령
- (b) 제3국 관계관청의 조직 및 검사업무, 검사업무 추진능력 및 검사대상품의 관리 능력과 현행 법규 집행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설
- (c) 대EC 수출용 수산물의 제품 가공중 저장, 수송중의 실제 위생상태
- (d) 부칙 제 V 장에 규정된 표준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제3국이 줄 수 있는 보장

4. 제1항 관련 수입조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대EC 수출용으로 발송한 탁송품에 반드시 동반하여야 할 위생증명서의 취득절차
- (b) 수산물의 확인 표지를, 특히 주 가공시설의 허가번호와 함께 필히 표시하고, 냉동품일 경우와 양륙 즉시 통조림용으로 사용될 것 및 (a)항 조건으로 공급되는 제품 증명서를 보유한 것은 제외한다.
- (c)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C 집행위원회에 등록하고 (가공)시설과 경매 또는 도매시장에 대한 허가대장 작성 제3국의 관계 관청은 EC 집행위원회와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가공공장에 대한 허가 대장을 1부 또는 그 이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어떤 (가공)시설은 제3국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EC에의 수출이 공식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허가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승인은 다음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요건 준수

○ 제3국 공식 검사기관의 점검

5.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4(a) 및 (b)항의 관련조건들은 개정될 수 있다. 제4(c)항에 관련된 허가대장은 EC 집행위원회에 의거

EC 집행위원회 결의 90/13/EEC를 근거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6. 특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한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항에 따른 검사 수행후 특별 승인을 받은 시설이나 가공선박일 경우에는 동 제3국의 시설로부터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검역이 불가능한 제3국의 가공선박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수입허가 결정에 수산물인 동 시설이나 가공선박으로부터 수입한 이후에 지켜야 할 특별 수입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7. 제1항과 관련된 수입조건을 결정하기까지 회원국은 제3국의 수입수산물에 적용하는 조건이 최소한 EC 제품의 가공 통제 및 시장출하 조건과 대등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지침서 90/675/EEC에 규정된 규칙과 원칙은 특히 회원국에 의하여 수행된 검사에 대한 검사기관과 그 검사의 추적에 적용한다.
2. 본 조 제1항과 관련된 규칙과 원칙의 준수에 구애됨이 없이 지침서 90/675/EEC의 제8조 (3)항 및 동 제30조에 규정된 결정에 대하여 지연되고 있는 이행, 그리고 본 지침 제8조 (1) 및 (2)항의 적용을 위한 국가별 규칙에 관련된 본 지침 제11조 등은 금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III장 종 결 규 정

제 13 조 부칙은 EC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유효 다수결로 결정하는 EC의회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 14 조 EC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의한 후 1992년 7월 1일까지 특별 공급을 억제하도록 조건이 주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지방시장에 공급하는 소형 가공공장에 맞는 소규모의 시설과 요건이 되는 장비에 관하여 EC조약 제43조에 규정된 투표절차에 따라, 또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활동하는 위원회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동 제안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1.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문제가 뒤따라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은 결의사항 68/361/EEC에 의거 설치된 상임 수의(가축병 치료)분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금후 소위원회라 부른다) 자신의 발의권을 행사하거나, 회원국의 요청에 회부하여야 한다.

2. EC 집행위원회의 대표는 소위원회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의장이 사건의 긴급 정도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제한 시간 안에 회시하여야 한다.

그 의견은 EC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위원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일 경우에는 조약 제14조 (2)항에 규정된 다수결로 결정, 전달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내의 회원국 대표의 투표는 그 조항에 명백하게 나타낸 방법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3. (a) EC 집행위원회는 만일 그 의견이 소위원회 의견에 의한 것이라면 당면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b) 만약 당면조치가 소위원회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EC 집행위원회는 지체없이, 취한 조치와 관련

된 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만약, 위원회 조회일로부터 3개월 기간 안에 위원회가 대응하지 않아 이를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안조치를 단순 과반수 결의로 반대 결정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치를 EC 집행위원회가 채택하여야 한다.

제 16 조 1993년 1월 1일까지 본 지침서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제에 실패할 가능성을 참작하여 제15조에 규정된 조치에 의거 2년간 필요한 과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지침의 각 조항들은 그간 습득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1998년 1월 1일 이전에 EC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활약하는 위원회가 재 심사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원들은 본 지침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조항들의 효력을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동조치 내용을 EC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들 조치를 채택하였는데 그들은 본 지침을 참조문으로 인용하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니면 이와 같은 참조를 그들의 공식 발간물 간행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참조를 정하는 방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 19 조 본 지침을 회원국들에게 청원함

1991년 7월 22일 부러셀에서 서명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원 장

P. OANKERT

참 고 문 헌

- 국립동물검역소. 1993. 「동물검역연보」.
- 국립수산물검사소. 1993.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편람」.
- _____. 1994 / 1995. 「수산물 검사연보」.
- 국립식물검역소. 1994. 「식물검역연보」.
- 김명호. 1993. “HACCP(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시스템,” 「식품KS정보」 23.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농림수산부. 1995. 「WTO/SPS 협정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관련규정」.
- 상공회의소. 1993.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연구」.
- 수우회. 1987. 「현대한국수산사」.
- 이재옥 외. 1993.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 2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진웅. 1994. 「식품의 위해 미생물관리와 HACCP」, 「식품KS정보」 26.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조흥수, 김동민. “WTO체제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농업정책연구」 22(1). 한국농업정책학회.
- 日本植物防疫協會. 1991. 「植物防疫の軌跡」.
- 수산청. 1981.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수산청. 1995. 「수산물 수출입실적」.
- 통계청. 각연도. 「도시가계연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연도. 「식품수급표」.
- 한국수산회. 각연도.
- 박성래, 정명생. 1994. 「수산물의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빈

면

연구보고 R324

WT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찍은 날 1995. 12 펴낸날 1995.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